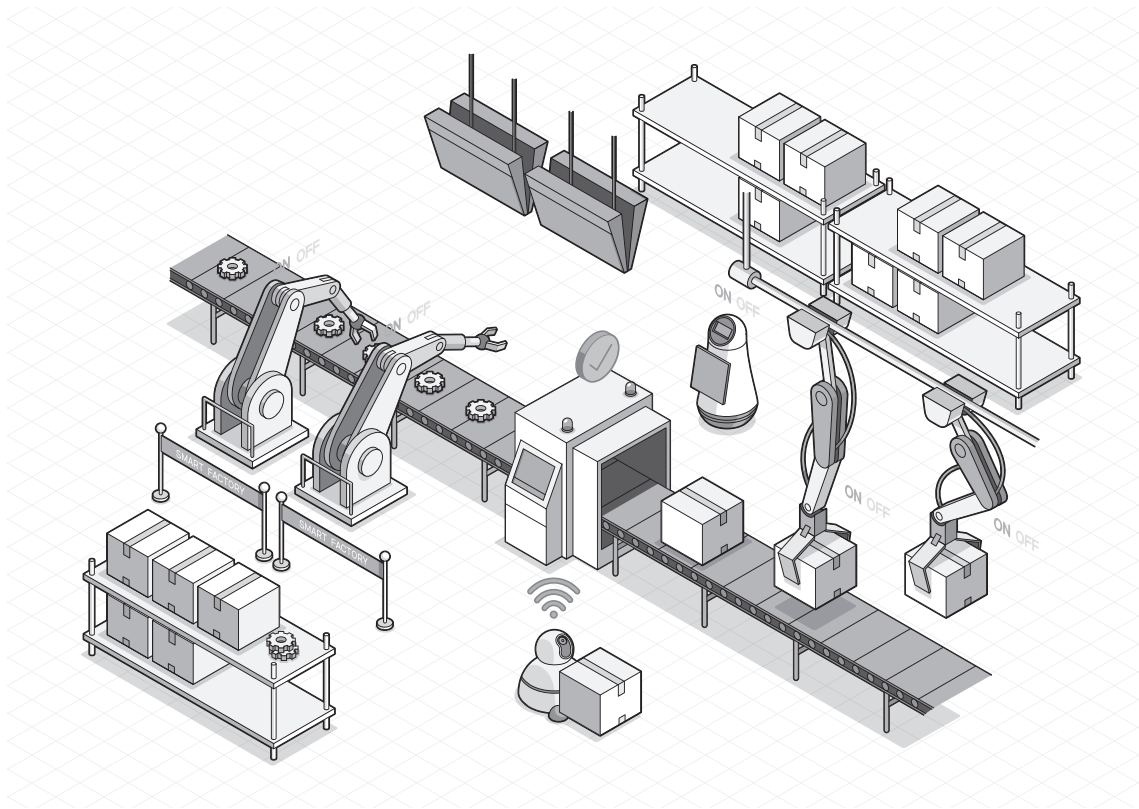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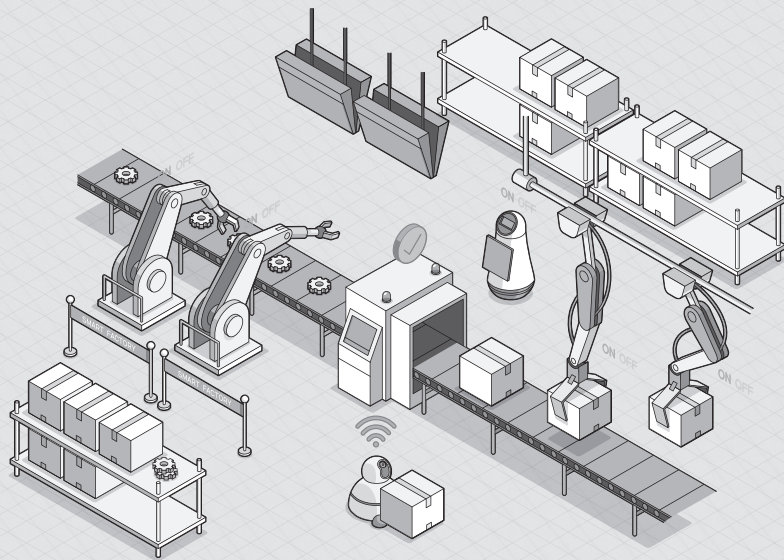
일시 2024년 8월 8일(목) 13:00~

장소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대강당



Contents

01. 개회 및 일정안내	5
02.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9
03.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43
04. 성과창출 및 지식재산권	81
05.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121
06. Q&A 및 폐회	131
- 실집행률 저조기관 대상 1:1 상담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01

개회 및 일정안내

I 추진배경

-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기업) 교육을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II 행사개요

- 일 시: 2024년 8월 8일(목) 13:00~
- 장 소: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 주 관: (재)경남지역산업진흥원
- 주 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참석대상: 지역특화산업육성+R&D,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수행기관 및 사업 관계자 50명 내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0명 내외(대표, 과제 총괄/책임자/담당 등)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남지역산업진흥원 등 관계자 10명
- 주요내용
 -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및 사례
 -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Ⅲ 세부일정

날짜	시간	내 용	비고	
8/8 (목)	13:00~13:20	20'	○ 참석자 등록 및 행사 안내	
	13:20~14:50	90'	○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필수)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집행 - RCMS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연구윤리 및 청렴교육	김정숙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14:50~15:00	10'	○ 휴식	
	15:00~15:50	50'	○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 연구노트 작성기준 - 연구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	이승민 그룹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5:50~16:40	50'	○ 성과창출 및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및 사례	이헌영 대표이사 (특허법인 남촌)
	16:40~16:50	10'	○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정영선 선임연구원 (경남지역산업진흥원)
	16:50~		○ Q&A 및 폐회 - 실집행률 저조기관 대상 1:1 상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02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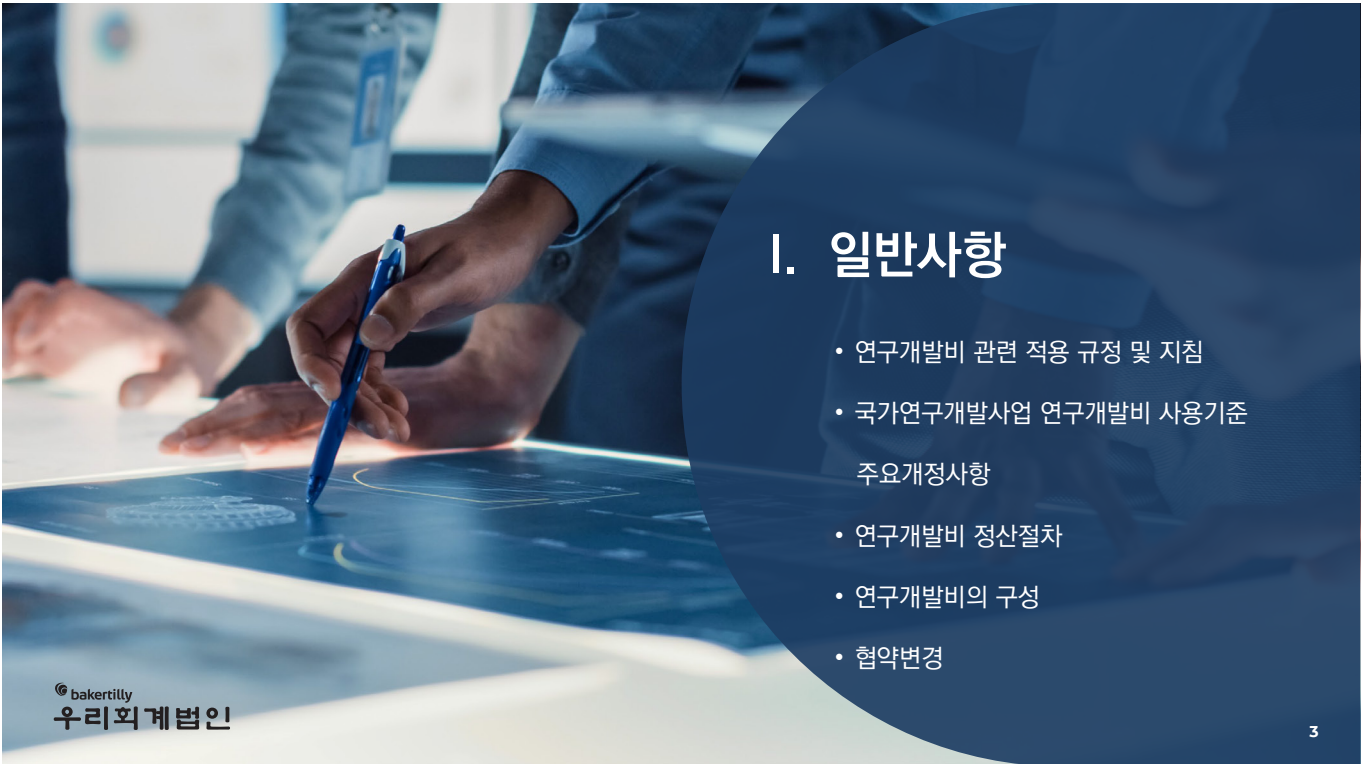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정산설명회

연구개발비 산정·집행·관리 및 정산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정숙
2024. 8. 8.

CONTENTS

I. 일반사항	03
II. 세목별 정산기준	19
III. 세목별 증빙서류	44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52



I. 일반사항

- 연구개발비 관련 적용 규정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개정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 연구개발비의 구성
- 협약변경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3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관련 적용 규정 및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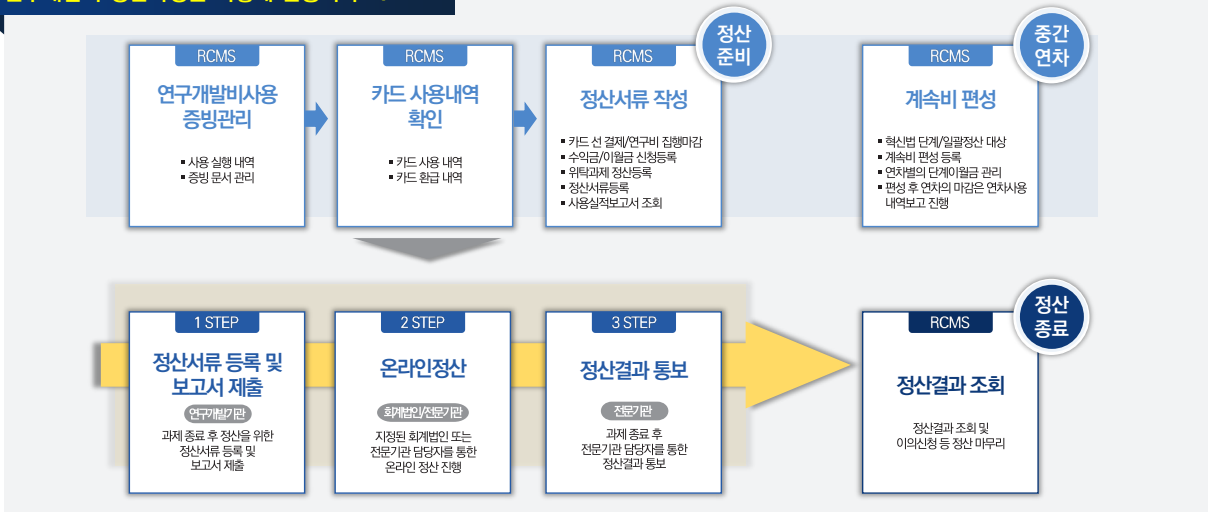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기준	
고사훈령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문기관 지정 고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안	
	연구지원시스템 통합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과학기술법 제283조)	
중소기업R&D 고사훈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022-30호, 2022.04.26]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각 사업별 관리지침 [관리지침_2024.05.02]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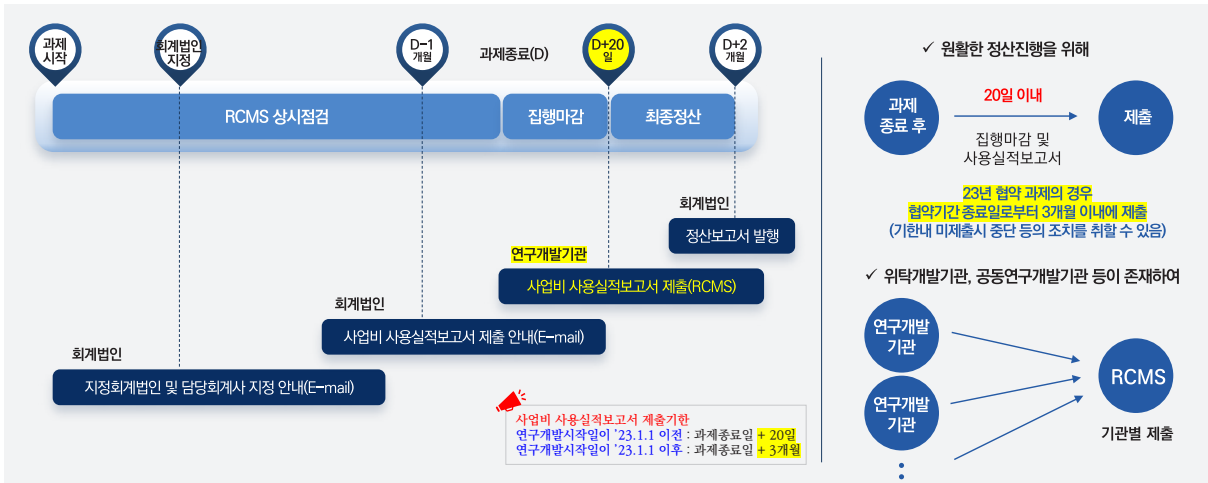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연구개발비 정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5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 유의사항 사업관리시스템(RCMS)을 통해 과제 수행 중 상시점검, 과제 종료 후 정산이 진행됨. 다만 협약 과제의 경우 최종년도 종료 후 일괄 정산하며 연차별 사업비 잔액은 차년도로 자동 이월 됨.

6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bakertilly
우리뢰계법인

Step 01 RCMS 상시점검

과제 시작

회계법인 지정

D-1 개월

과제종료(D)

RCMS 상시점검

집행마감

최종정산

- 목적 : 사업비 오집행을 사전 방지하고 부족한 증빙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과제수행 도중 지정회계기관의 정산 컨설팅
- 시기 : RCMS를 통해 과제수행 도중 상시 실시
- 의견 : 정상, 미흡
 - (불인정예정 → RCMS 사업비 취소 필요 또는 증빙자료 보완필요 → 부족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과제 진행 중인 기관이 RCMS에 제출한 지출내역과 증빙을 상시 검토)
 - ✓ 미흡 건에 대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가능
 - ✓ 부정사용 발견시 즉시 전문기관에 통보 후 조치 (실태조사 등)
 - ✓ 정산의 사전 준비 절차로서 상시점검을 보다 정밀하게 진행한 기관일수록 정산 확정시 불인정금액 최소화

※ TIP

상시점검 결과 증빙문서 미흡으로 확인되어 증빙 문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현황 > 연구비 사용내역 메뉴의 증빙파일 상태 열을 클릭하여 보완

⚠ 유의사항 상시점검 결과를 토대로 회계감사가 이루어지므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 점검의견 '미흡'건 사전 보완 필요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bakertilly
우리뢰계법인

Step 02 RCMS 계속비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단계과제 관리

혁신법에 따라 과제를 연차 → 단계 단위로 정산하게 되며 단계 내 이월금 관리 기능 추가(계속비 편성기능)
- '계속비'는 단계 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RCMS에서 '계속비 편성' 메뉴에서 진행

변경 전

변경 후

세부기능

- 계속비와 본 연차재원 중 계속비 우선 사용 유도 (추후 수정가능)
- 계속비 사용금액의 정산 비율은 해당 단계비용 (정부, 기관부담금)을 적용
- **계속비로 편성된 예산은 전액(원목간 이동) 불기**
- 단계 이월금의 남은 잔액은 계속비 편성 시 이월 가능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Step 03 연구비 정산 자료 요청

회계법인은 각 과제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변동가능) 연구개발기관에 공문 발송

연구책임자, 연구비 담당자에 연구비 정산을 위한 요청자료와 정산자료 제출시 유의사항을 공문형태로 공지(이메일)

연구책임자는 회계법인에 연구비담당자 정보 공유 요망

정산 안내 내용

- 정산서류 제출요령
- 세목별 제출서류
- 과제담당회계사 및 정산수수료 납부절차
- 문의처 등 기타사항

❗ 정산 안내 공문은 협약 당시 전문기관에서 제공한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변경시 회계법인에 변경된 책임자, 실무담당자 정보 공유 필요

9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Step 04 정산자료 제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과정

- 01

카드대금 선입금
카드대금 결제일이 도래하지 않아 집행마감이 어려운 경우에 사용
- 02

정산서류 등록(추가정산서류)
현물부담확인서, 기관 내부규정(국내외여비, 전문가 활용비 등),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전문기관 승인공문 등 정산 전반에 걸쳐 참고가 되는 서류 등
- 03

전년도이월금사용등록
이월금 사용한 경우(하나의 집행 건 내 이월금/본예산 분할 등록도 가능)
계속비 편성
단계정산 과제의 경우 단계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ROMS '계속비 편성관리' 메뉴에서 계속비 편성 등록)
- 04

집행마감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집행마감, 마감 이후 연구비 사용 불가 (**집행마감 전 회계감사비용 선지정**)
- 05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보고서제출 확인사항(카드 결제완료, 부가세 복원, **현물 등록**, 이월금 등록 등)

※ 주요 서류 보완 사례

세목별 집행한 증빙서류 외 사용실적보고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는 정산서류를 누락하여 송부한 경우 발생

01. 사업계획서, 협약변경 통보 및 승인상세내역
전문기관 승인사항인 경우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승인공문 포함

02. 현물부담확인서
[서식 7-1]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양식 준용

03. 연구개발기관 예비 규정 등
연구실운영비 등 물품구입규정, 전문가활용비산정 규정, 예비규정을 전반적으로 따르고 있음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예비 규정 제출 필요

10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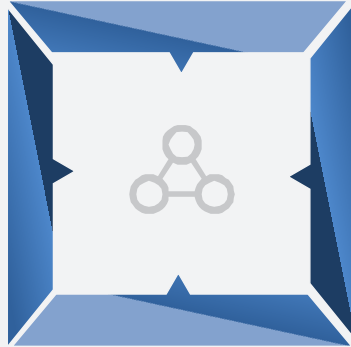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Step 05 정산자료 검토 및 보완자료 요청

○ 담당회계사 검토

담당회계사는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사용 실적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

○ 누락된 증빙 또는 불인정 가능성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연구개발기관에 요청



○ 담당 회계사는 연구개발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와 추가 증빙을 토대로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감사(검토) 결과를 도출

○ 담당회계사가 작성한 정산 결과보고서는 내부심리 절차를 거쳐 감사절차를 완료

회계사는 정산결과보고서 Draft를 연구개발 기관 담당자에게 E-mail 형태로 전달하여 정산결과보고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

11

일반사항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Step 06,07 정산결과 보고 및 통보

회계법인은 RCMS에 정산결과(정산내역)를 입력하고 정산결과보고서를 upload함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1회) 하도록 연구개발기관 측에 고지

-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시 전문기관은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산을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회수금액을 확정
- 정산과정 중 전문기관 담당자와의 교신내용 및 이슈사항 등은 문서화 하여 보관

12

I 일반사항

연구개발비의 구성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직접비					간접비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인건비 외부인건비 비영리기관 연구부서소속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입·설치비 임차비 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료구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약 - 재료 관리시스템 등 운영비 연구재료 제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험제품 - 시험설비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회의비 출장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실운영비 연구인력 지원비 종합사업관리비 그 밖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게재료 - 인쇄비, 복사비 - 공공요금 및 수수료 - 문헌구입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접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지원비 - 연구지원비 (안전관리비 등) - 성과활용지원비 (특허출원비 등)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인건비 					

I 일반사항

협약변경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전문기관 승인사항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승인요청)

전문기관과 상호협의 및 승인시 효력발생



협약변경 승인신청을 위해서는 변경내용에 따라 다음의 제출서류가 필요함. 제출서류는 온라인으로 변경승인 등록시 파일 업로드를 통해 제출
☞ SMTECH > 과제수행 > 전자협약 > 협약변경 관리 > 과제명 > 변경승인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의 추가 및 변경
- 연구시설 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 (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 협약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 20% 이상 증액(단, 감액 및 20% 미만의 증액의 경우에도 영리기관 현금인건비 변경,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등 중요한 협약변경 사유에 해당될 경우 승인 필요)
- 연구책임자 변경은 상호협의의 통해 승인(주관·공동·위탁 연구책임자 모두 포함) - 연구책임자는 사망, 이민, 퇴직, 부서이동, 장기출장(교육 및 연수 포함)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음
- 간접비의 증액(단, 계상 가능한 한도 내에서)
- 단계별 연구개발비 총액 변경

I 일반사항

협약변경

bakertilly
우리뢰계법인

전문기관 승인사항 (협약종료 1개월 전까지 승인요청)

전문기관과 상호협의
및 승인시 효력발생

- 7.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② 신규 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단, 환율 변동으로 인한 금액 변경은 제외)
- 9.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 10.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연구실운영비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시 인정받은 영리기관만 해당)
- 1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
 - ②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12. 연구활동비 중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13.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방법 변경
- 14.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개발기간의 연장, 개발기간 외 연구개발비 지출(개발기간이 연장된 경우 승인없이 사용 가능)

I 일반사항

협약변경

bakertilly
우리뢰계법인

연구개발기관 통보사항 (자체 변경은 시스템에 즉시 수정)

과제관리시스템에
등록시 효력발생

1. 연구개발기관의 주소, 대표자, 기업(기관)명칭, 참여연구자, 인건비 계상률, 참여기간, 금액의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정보시스템에서 해당사항을 즉시 수정. 다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자체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변경 통지를 갈음할 수 있음
2. 연구개발기관의 주소변경이 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변경 전 전문기관에 해당사항을 공문으로 통지
3. 신규인력의 등록 및 변경 :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범부처통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수정
 - (단, 신규 등록 및 변경되는 인원은 채용일로부터 연구개발 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여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채용된 연구자이어야 함)
4. 신규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 변경 :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인건비 계상률, 금액 등을 변경 가능
5. 전문기관 승인사항(중요한 협약의 변경)을 제외한 연구비 사용의 계획 변경
6.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시설의 동일 연구장비·시설의 규격, 금액의 변경이나 유사기종으로 변경.
 - 다만, 협약시 부가세 포함 3천만원 미만의 장비 구입계획이었으나 부가세 포함 3천만원이상 장비구입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승인필요
7. 연구개발비 계좌 변경
8. 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 및 방법 변경

❗ 유의사항 '협약의 변경' 요청시 제출서류는 '24.05.02 개정된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 규정 참조



II. 세목별 정산기준

(사용용도, 산정기준, 사용기준, 회수기준)

-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 인건비/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간접비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01 공통 사용기준

사용기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 지침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은 동 지침을 따름
- 연구개발비 지급 거래 건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지출결의서, 연구장비 실물 사진 등의 관련 증빙자료를 의무적으로 연구개발비관리시스템(RCMS)에 등록하여야 함
- 기술개발 연구개발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함. 단, 동 연구개발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이유로 검수를 생략할 수 없음
- 연구비 카드 또는 RCMS에 등록된 카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 사업비 통장 또는 계정에서 직접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함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결제일까지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등록)
-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을 원칙으로 함
 - ※ 예외: ①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②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 ③ 연속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 * 성격서 발급비용(협약기간 내 의뢰한 경우에 한함), 연구수당, 공공요금,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최종보고서 제본비, 기술자료임치비, 회계감사비용, 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환불지급 사용액
-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단계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진행한 금액을 다음단계 연구개발비로 요청 불가
- 연차별 연구개발비의 사용 잔액은 차년도 연구개발비의 동일 세부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bakertilly
우리희계법인

01 공통 사용기준

사용 기준

- 10만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영수증을 사용하여야 함
다만, 직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 거래상대방의 휴폐업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 불가
- 현물의 사용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부담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 (증빙서류관리) 사업비 사용 증빙서류 원본에 해당 세부 사업명과 과제번호(예시 참조)가 새겨진 고무인을 60mm x 10mm(중고덕) 크기 형태로 제작하여 대각선으로 날인하여야 함

* (예시)

○○○○○○개발사업 :
SA100XXX 집행영수증

60mm x 10mm(중고덕)
사업명, 과제번호 필수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bakertilly
우리희계법인

02 회수기준

공통 회수기준 예시

-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연구개발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연구개발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연구개발기간 이전 또는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 전후. 단, 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 동 지침 12.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 기타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기관 중에서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 연구개발비 현금 거래를 한 경우
-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 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의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 (간접비 불인정금액 =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II

세목별 정산기준
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사용 용도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산정 기준 (1/2)

- 인건비 산정 기준 : (급여총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인건비계상률*(%))
- 개인사업자 대표의 경우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기준/12 × 참여기간 × 인건비계상률
 - 소득이 없거나,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총액* 이하인 개인사업자 대표는 상용근로자 월 평균급여로 계상 *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신년도의 상용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 기준
- 청년인력 의무채용 : 정부출연금 4억원당 만 15~34세 신규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 상태유지 (24년 이후 협약 과제는 5억원 이상)
 -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2개월 이후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지속할 경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 채용공고 게재, 면접 실시 여부 등을 통하여 대체인력 고용 노력 확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직만 인정
-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사업계획서에 산정한 경우 한해)
 - 연구수당 지급으로 발생하는 4대보험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은 인건비 계상 불가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은 기업승계 등 불가피하게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자로 등록 가능

II

세목별 정산기준
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산정 기준 (2/2)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또는 참여연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① 아래 해당하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과제
 -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기술개발과제의 산업기술표준분류상 소분류가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
 - ②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
 - ③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창업일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 소속 직원
 - ④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
 - ⑤ 그 외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경우
- 인건비 등 회계관리체계가 구비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연구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등의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 협약 시작일을 시작으로 매 3개월 주기로 인건비를 미리 집행할 수 있다.

II

세목별 정산기준
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사용 기준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명의의 통장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직접 지급
- 인건비는 연구개발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실지금액(연봉총액 또는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급여총액)
- 외부인건비 계상시 원 소속기관의 장이 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제출 및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단체에 통보해야함 (단, 기업, 대학, 국립·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인건비계상률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 **신규인력**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 관련 증빙서류 제출
- 참여연구자 변경 및 인건비계상률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종합관리시스템 및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정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의 참여연구자 및 변경통보된 참여연구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 불인정
- 신규 채용 인건비는 당초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수가 변경 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예산포함) 내에서 인건비계상률, 금액 등을 전문기관승인이 변경 사용 가능 (다만, 신규채용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영리기관은 현금인건비 총 금액이 변경될 경우 전문기관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지 않은 현금인건비 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인정**

23

II

세목별 정산기준
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3 회수기준

회수 기준 예시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자 변경 및 신규연구원 등록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연구개발계획서 상 등록되지 않은 인력의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 총액을 변경하거나, 신규인력의 현금 계상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8. 청년의무채용인력의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기 지급 인건비 포함, 단, 대체인력 고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경우 인정 가능)
9.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포함)로서 연구개발에 참여한 것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24

세목별 정산기준
학생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사용용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자에 지급하는 인건비
※ 기업은 계상 불가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 (참여기간(월))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금액

구분	세부 산정 예시
학생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사과정 : 월 3,000천원 이상 ○ 석사과정 : 월 2,200천원 이상 ○ 학사이하 : 월 1,300천원 이상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를 따르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세목별 정산기준
학생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사용 기준

-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됨

회수 기준 예시

1. 학생인건비를 연구자가 회수하여 공동 관리한 경우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 인건비 전액
2. 학생인건비 지급단가 초과집행 금액
3. 월별 인건비계상률 100% 초과집행 금액
4. 학생연구자를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6. 타 기관에 소속되어 인건비(급여)를 받고 있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시설·장비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차·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치비

※ 범용성 사무용기기(PC,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 비용은 연구활동비 내 연구실 운영비로 집행
(영리기관인 경우 협약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된 경우에 한하여 구입가능)

산정기준

- 원칙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수수료 등 관련 부대경비는 현금 계상 가능
- 외부 임차 등이 불가능하여 부가세 포함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등을 불가피하게 구입해야 하는 경우 협약시 연구시설·장비 도입계획서를 제출해야 함(1억이상인 경우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주관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는 내용연수가 5년 이내인 경우(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함)에 한하여 구입가의 20%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가능
다만, 연구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한 비영리연구기관인 경우에는 현금 계상이 가능하고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흡수)사용할수 있음

구분	내용
연구시설장비도입기한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시설·장비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사용 기준

-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등 유형적 발생품 중 부가세 포함 1천만원 이상의 단일 구입품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구입품, 0'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하여야함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의 구축(구입) 연구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구축(구입)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종합관리시스템(SMTECI+), 범부처통합정보시스템(RIS) 및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등록(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장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등록)
- 건당 단가금액이 3,000만원(부가기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 포함) 이상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의 변경시 전문가의 승인 필요
 1. 원래 계획에 없는 신규구매
 2. 원래 계획과 다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구매
 3. 원래 계획상 예정된 구매의 철회 또는 취소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 구입시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2개월 이전까지 구입원료분에 한하여 인정
- 연구시설·장비 및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이유로 검수를 생략할 수 없음

회수 기준 예시

1. 연구개발기간(단계사업의 경우 해당 단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 구입 금액(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의 연구개발 과제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구분시 해당 단계 종료일),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가능)
2. 전문가의 승인이 필요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변경(금액, 모델 등)을 승인 없이 진행하여 집행한 경우
3.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을 첨부하지 않은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4.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임차료
5.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가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6.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의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의 유지보수비, 공동연구환경 구축비
7.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인정을 받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매·설치 관련 비용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재료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등

사용용도

-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개발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 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비용
 - 연구개발기관 내부 자원을 활용하여 자체 제작할 경우 필요한 내역은 인건비, 연구재료 구입비 등으로 사용

산정 기준

- 원칙: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비 구입비는 현금 계상
 -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 이때 현물가액은 연구개발기관의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원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연구개발기관 보유 시험제품·시험설비가 자산으로 등재된 경우 현물로 산정 가능하며 기준단가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회수 기준 예시

1.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구입 재료비와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2. 연구개발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된 경우
3. 자산으로 등재되지 않은 시제품, 시작품을 현물로 사용한 금액

29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1/4)

항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동비(원고료, 강사료, 자료료 등 포함),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된 시험·분석·검사, 안전점검·검사비, 임상시험,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단, 직접비(현물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 전문가활동비는 참여연구자가 아니며 연구개발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여비 등을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할 수 있으며 아래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를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 협약(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 시 정한 예산 범위 내에서 산정 ② 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 또는 연구개발과제 내 비영리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전문가활동은 예외로 계상 가능 <p>*최소단위 부서: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직제규정 상 최소단위부서를 말함</p> <p style="text-align: center;">〈전문가 활용인력이 제한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인정 분야〉</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유형</th> <th>전문가 소속부서</th> <th>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td> <td>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td> <td>X</td> </tr> <tr> <td>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td> <td>O</td> </tr> <tr> <td rowspan="2">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td> <td>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td> <td>X</td> </tr> <tr> <td>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td> <td>O</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기관 중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하며, 비영리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에서 현금 책정 누락 등 부득이 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유형	전문가 소속부서	전문가 활용비 사용가능 여부												
비영리기관 상호 간 전문가 활용 A기관 ↔ B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비영리기관 내 전문가 활용 A기관 → A기관 소속 전문가	참여연구자와 동일부서	X													
	참여연구자와 별도부서	O													

30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희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2/4)

항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 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 된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를 계상하며,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동 지원비)은 계상불가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사용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1인당 1식 3만원 초과 불가 - 강사로,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연구개발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관련 비용 계상 불가
출장비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국내외 출장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연구개발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소프트웨어 활용비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이내에 월 또는 연단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도입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매 가능 (단 비영리기관에 한해 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분담하여 기관 단위로 통합구매 가능)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까지 도입가능 ※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31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희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3/4)

항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연구실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 사무용품비 -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은 계상 불가. 단,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하여야 하고, 평가 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 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개인성용품, 기호용품 등은 계상불가)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 비용 계상불가 비품, 기기의 구입·유지비용이 아닌 경우 계상불가
연구인력 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참여 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교육·훈련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 과제와 관련없는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은 사용 불가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계상불가 - 종신 학회비 계상불가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계상불가 -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계상불가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계상 불가 -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계상 불가 초과근무식대 - 1인당 1식 1만원 이내

32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4/4)

항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소요 금액으로 산정 공공요금은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연관성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ex) 실행 공공요금 X (참여연구자/총원) X 평균인건비계상률 위탁정산 수수료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일용직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일단위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산정

33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1/3)

사용 기준

- "출장비, 연구실운영비,전문기활용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기준(규정)을 적용하여 집행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안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 불가**
-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 이하의 경우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회의비는 단독 개최가 아닌 외부기관(수행을 위한 타 연구개발기관 포함)이 참석한 회의에 대해서만 소요경비 인정**
- **외부전문기술활용비: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
- 비참여연구자에게 교육훈련비, 여비등 연구비 사용 불가

구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지급 유형	회수 대상
연구개발기관 상호 간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료 지급	영리, 비영리기관 → 비영리기관	X
	영리, 비영리기관 → 영리기관	O
그 외(단독 판매처 등)	전문기관의 사전승인 연구개발기관	X

회수 기준 예시

-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1.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1. 연구개발기관별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2. 연구개발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3.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연구개발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00연구원, 00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간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34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2/3)

회수 기준 예시

■ 회의비

1. 사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진행된 회의비
2. 주류 등 유희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연구개발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1식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4. 평일 점심에 집행한 식대, 주류 등 유희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

■ 연구실운영비(영리권역에 한함)

1.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품 구매 비용 제외)
2.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되지 않은 사무용 기기/사무용 소프트웨어/소요 비용 및 연구실 환경 유지 등을 위한 비용

■ 소프트웨어활용비

1. 연구개발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 외 네트워크 포함) 활용비용(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재난·재해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종료 1개월 전까지 인정가능)
2. 상기 1.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해당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예외)

■ 출장비-국내

1. 실비에 의한 차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 출장비-국외

1. 연구개발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2. 국외여비 지급일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3.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4.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5.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3/3)

회수 기준 예시

■ 연구인력지원비

1.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2.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연구개발기관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3.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비 등
4.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5.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중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6. 참여연구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7.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아근 식대

■ 그 밖의 비용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다만, 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2.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적이 없는 영수증
4. 선물(기념품) 구입비(연구개발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5.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수당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사용 용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부독이하게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이 발생할 경우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내에서 사용가능)
- ※ 연구근접지원인력 등 지원인력은 미해당

산정 기준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협약시 산정한 수정인건비의 10% 이상을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야 함
-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인건비(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제외) + 학생인건비] X 20%
-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기여도 평가 후 지급
-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 사용액의 70% 이상 지급 불가(참여연구자 1명인 경우 제외)**
-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만큼에 해당하는 연구수당은 정산시 회수
 - ☞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 20/100)

$$*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중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times 100$$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상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분모)에는 포함)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수당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1/2)

사용 기준

-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연구수당 총액보다 증액하여 사용 불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한다)이 증액되는 경우
 - ㉡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을 다음 단계의 연구수당에 포함하여 사용하여서는 안됨(이월)
-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 실시 지급 가능(중도 퇴사자 포함)

회수 기준 예시

1. 협약시 산정한 연구수당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2. 기여도 평가, 연구개발성과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연구자가 연구책임자 1인인 경우* 제외)
* 연구개발기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동안 참여연구자가 1명인 경우를 의미하며 연구책임자 1인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해당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한 연구자는 2인으로 간주함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질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
6. 비참여연구자에게 지급된 금액
7.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인한 연구수당을 과다 지급한 금액**
8.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금액
9. 평가결과가 동일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10. 평가결과가 상이하나, 연구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II

세목별 정산기준
연구수당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2/2)

회수기준 예시

- 11.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 한 경우
- 12. 과제를 성공적으로 종료하지 못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 판정을 받은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중단 또는 문제과제로 판정된 경우
- 13.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산식) 연구수당 지급액 X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 \text{직접비 사용비율}(\%) = \frac{(\text{해당단계 직접비 총 사용금액})}{(\text{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times 100$$

- ※ 현물,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제외 후 계산
-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총액(분모)에는 포함)

II

세목별 정산기준
간접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항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인력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의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지원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연구개발능력성과급 ▪ 중소·중견기업의 연구지원전문가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은 실제로 필요한 경비에 대해 직접비(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퍼센트 이내로 계상 ▪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한 대학의 간접비고시비율은 5%
연구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기관 공통 비용 ▪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안전관리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3조제2항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17% ▪ 연구개발능력성과급은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내로, 영리기관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내로 계상
성과활용지원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원·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활용지원비는 기술창업 출원·출자금을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규정에 따라 당초의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 까지 계상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은 연구관리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인력지원비로 계상할 수 있음

II

세목별 정산기준
간접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사용 기준

- 당초 산정한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은 반납해야 함
- 최초 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 불가
- 영리기관은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현금 10% 이내에서 증액하여 사용 가능
- 연구관리 전담부서(중소기업혁신협력센터 포함)를 설치한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에 한하여 기관의 통합 관리 및 사용을 인정
- 비영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를 용도 외로 사용하지 않는 한 사용잔액을 회수하지 아니함. 이때 비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지급된 간접비를 적립하여 해당 용도에 한해 사용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이외, 개인명(개인사업자 대표자 제외)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불인정
-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자체 규정을 이유로 검수를 생략할 수 없음

회수 기준 예시

1. 전문기관의 승인없이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2.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회수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
3. 기술자료임치비를 계상하여 집행한 후 기술개발결과물을 임치하지 않은 경우 (임치확인증 확인)
4. 개인명의특허출원·등록 비용을 집행한 경우 (개인기업의 대표자 명의 출원 예외)
5.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한 경우 초과된 금액 신설

III. 세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간접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III

세목별 증빙서류
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보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 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음
공통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시설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간접비 - 물품 등을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이유로 검수를 생략할 수 없다
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인건비(검직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총 인건비 계상률,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은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 준수 여부 판단자료로 대체 가능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해당시) 현물출자확인서(해당시) 외부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의 경우 재학증명서)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근접지원인력 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III

세목별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 대학은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수료등록, 휴학 상태 확인서류, 정부출연기관은 재학증명서를 통해 재학상태 확인서류,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학생인건비 지출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며 아래 서류만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서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계상기준, 참여기간, 계상률, 변경사항 등) 계좌이체증명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외) 휴학생의 경우 근로계약서
연구시설·장비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국가연구시설·심의위원회 공문(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의견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외자구매(국의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III

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연구재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 견적서 ◎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연구활동비	회의비	<p><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견적서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p><회의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목적, 일시, 장소, 참석자 명단, 회의내용 등) * 단, 10만원 이하(부가세 포함)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 포함, 사진첨부 불요)로 대신 할 수 있음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p><회의·세미나 개최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일시, 목적, 장소, 내용,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III

세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외부 전문 기술활동비	기술도입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기술도입 계약서 ◎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출장비	국내여비	<p><국내-여비기준 有> - 내부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출장지 카드매출전표(법인 또는 개인카드)</p> <p><국내 - 여비기준 無> -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계좌이체증명, 출장지 카드매출전표(법인 또는 개인카드)</p>
		국외여비	<p><국외 - 여비기준 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내부여비규정,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p><국외 - 여비기준 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 계좌이체증명,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III

세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연구 활동비	연구실 운영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명세서, 구매의뢰서, 자체규정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소프트웨어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 거래명세서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 최소 단위 증명 서류(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구인력 지원비	교육 훈련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교육수료증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학회등록비 및 세미나 참가비 영수증
	아근·특근 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지출결의서,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 ◎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III

세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연구 활동비 (그 외 비용)	문헌구입비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거래명세서, 검수완료 확인서
	논문 게재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자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각종 세금 및 공과금 ·공공요금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 청구서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매출전표(또는 세금계산서 및 계좌이체 증명)
	일용직 활용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III

세목별 증빙서류

연구수당, 간접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항목	항목 및 세부항목별 증빙서류
연구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및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지급신청서, 계좌이체증명
간접비	<p>[영리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계산서) 등 ◎ 관련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기타 전문기관의 정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연구관리 전문인력 인건비를 계상한 경우 산학연협력 코디네이터 교육 이수 및 자격시험 합격 증빙서류 <p>[비영리기관] - 해당사항 없음</p>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인건비

bakertilly
우리희게법인

Check-list

- 참여연구자별로 월별 급여명세서 및 연구원계좌이체증빙 등이 제출되었는가?
- 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율 포함)통보 없이 과대 집행된 금액은 없는가? (참여연구자 변경(인건비계상율 변경 포함)시 전문기관 보고사항 이행여부 확인)
-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참여연구자(프리랜서 제외)은 4대보험 직장 가입자인가?
- 기업소속 참여연구자,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 등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집행 되었는가?
- 중소기업 신규채용 현금인건비의 경우, 신규채용확인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류 등을 제출하였는가?
- 실제 급여총액보다 높게 지급된 금액은 없는가?
- 외부인건비인 경우,
 - 원소속기관 있는 경우 : 원소속기관이 비영리기관인가? 외부참여연구자 기관장 확인서를 제출하였는가?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에 지급하였는가 또는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에 통보하고 연구원 계좌로 이체하였는가?
 - 프리랜서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계약서가 있는가?
- 청년인력(청년의무채용)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였는가?

51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인건비

bakertilly
우리희게법인

연구비 집행 FAQ

Q1

[인건비 등록]

'23년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월급을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있는데, 12월 인건비는 어떻게 집행해야하나요?

A1. 내부 급여기준에 따라 1차년도 과제기간 내 발생한 12월 인건비를 1월에 지급하시는 경우, 계속비 편성 및 연차사용내역보고 제출 전이라면 연구개발비 집행 가능하므로 1월 지급시점에 맞춰 RCMS상 참여연구자 계좌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Q2

[연구개발기관 대표자 인건비]

연구개발기관 대표자도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요?

A2. 법인 대표자의 경우에는 일반 참여연구자와 동일하게 급여명세서 및 급여이체 증명을 제출하여야 하고, 개인사업자 대표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으로 하되, 소득이 없거나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최신년도의 상용근로자 월 평균 임금총액 이하인 경우 상용근로자 월 평균 급여로 계상 가능합니다.
[(www.index.go.kr/한국의 사회지표/월평균임금)에서 확인 가능]

Q3

[현물인건비 이월가능여부]

현물인건비도 차년도 계속비로 편성가능할까요?

A3. , 현물은 당해연차에서 모두 소진해주시어야 합니다. 연구개발기관의 현물로 산정된 금액을 사용하지 않고, RCMS 상 현물 잔액이 남은 경우, 현물잔액은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정산 시 불인정금액으로 정산금 처리되어 국고로 환수될 수 있습니다.

Q4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총당액]

종료된 과제에서 근로계약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총당할 퇴직금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A4. 재정산 후 반납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이어도 퇴직금 총당이 가능하지만,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기존에 총당할 퇴직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52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인건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비 집행 FAQ

Q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증빙 시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증빙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요?

A5. 참여연구자가 타 기관 취업으로 과제 참여기간 동안 인건비를 중복으로 지급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원의 인건비를 최초 지급하는 시기와 연구종료후 연구비 정산시기로 구분하여 두 번에 걸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인건비 중복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Q6

[신규채용 지연]
신규예정인력 채용이 늦어진 경우 신규인건비 예산 전액 집행이 가능한가요?

A6. 협약변경을 통해 연봉 증가, 참여자수 증가, 인건비계상을 상향 조정 등을 반영하여 전액 집행 가능합니다.

Q7

[현물인건비 RCMS등록시기]
현물인건비는 언제까지 RCMS에 등록하면 되나요?

A7. 급여가 월별로 지급되므로 매월 현물 등록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과제 수행기간 중 현물 등록을 누락한 경우라도 '집행마감' 전에는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Q8

[현물인건비 증빙서류]
현물로 참여하는 인력의 증빙은 어떻게 제출하여야 하나요?

A8. 관리지침상 필수 증빙서류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물인건비의 경우에도 급여이체증명을 필수 제출하셔야 하며, 미 제출시 불인정 처리됩니다.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Check-list

- 영리기관의 경우, 범용성 사무용기기(ex) PC, 프린터, 복사기 등)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하지 않았는가?
-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연구기자재, 시약, 재료비는 없는가?
- 범용성 소프트웨어(ex) Microsoft Excel 등)는 없는가?
- 전문기관 승인이 필요한 건당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변경 승인이 있는가?
- 구입한 연구시설 및 연구장비는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이 완료되었는가?
- 3천만원 이상 연구장비는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조달청 나라장터에서의 조달요청을 통한 중앙조달로 구매하였는가?
- 소속기관 내부 장비·시설·공간의 임차료(사용료)를 현금 집행 하지 않았는가?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비 집행 FAQ

Q9

[연구개발기관간 거래]

연구개발기관간 장비 및 재료비 구입 등 거래가 가능한가요?

A9. 불가능합니다.
장비 및 재료비 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기관 상호간 거래**는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불가능**합니다.

Q10

[범용성 기자재 수리비]

범용성 기자재(PC,프린터 등)의 수리비를 집행할 수 있나요?

A10. 불가능합니다.
범용성 기자재의 경우 연구비로 집행 할 수 없으며, 기관 자체의 운영비를 통해 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Q11

[개인카드 사용]

연구비 카드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카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연구자 개인카드로 먼저 사용해도 되는지요?

A11. 불가능합니다.
연구비카드를 발급 받기 전 연구자 개인카드 사용은 금지하고 계좌이체 또는 연구개발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향후 사용 연구비에 대해** 계정대체 처리를 해야 합니다.

Q12

[토너구입]

토너구입비는 어느 비목에서 집행하면 되나요?

A12. 연구활동비로 편성, 집행하면 됩니다.
재료비/전산처리비는 SW라이선스 임차 및 고장 수리 등 용도이므로, 토너구입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면 됩니다.

55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비 집행 FAQ

Q13

[재료비 청구 누락에 의한 차년도 과제 집행 가능 여부]

1차년도 과제종료 전 재료를 구매하여 검수까지 마무리하였으나 해당 업체에서 문제가 생겨 2차년도 과제가 시작되고 재료비 청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런 경우 2차년도 과제에서 집행이 가능한지요?

A13. 1차년도에 물건을 받았으면 1차년도 연구비에서 사전 원인행위를 하여 집행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다만 단계과제의 경우 계속비 이월하여 집행가능합니다.

Q14

[외자구매시 부대비용처리]

연구장비 외자구매시 관세, 운송비 등의 부대비용 집행가능한가요?

A14. 가능합니다.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및 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연구장비 구입대금으로 보고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Q15

[연구재료(시약) 현물 부담 증명 자료]

수행하는 과제의 참여기업 현물 부담금이 인건비 및 재료비(시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경우 재료비(시약)에 대한 현물 증명자료는 어떻게 구비해야 하는지요?

A15. 현물 구입 금액 및 실질 투입량을 기재해야 합니다. 현물부담금이 재료비(시약)인 경우 연구장비와 달리 소모성을 가지고 있기에 해당 기관의 현물 구입 금액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연구과제에 투입된 시약의 투입량을 적용하며, 연구노트에 연구 진행 상황에 따른 투입량을 기재하면 됩니다.

Q16

[계획되지 않은 재료비]

과제수행 중 사업계획서에 계상하지 않은 장비가 필요해 졌는데 사업비로 구입 가능한지요?

A16. 연구노트등을 통해 구입 후 실제 사용내역을 입증하여 과제 관련성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다만, 범용성장비는 구입 불가하며, 부가세포함 3천만원이상 장비는 전문기관 승인을 받은 후 구입 가능합니다.

56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Check-list

- 비참여연구자의 여비를 집행한 내역은 없는가? 출장결과보고서는 제출되었는가? 과제와 관련 있는 출장인가?
- 연구개발기관 내부 여비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였는가?
- 과제와 직접 관련 없는 연구비는 없는가?(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피복비, 화환구입비 등)
- 시험분석료 등에서 연구개발기관간 상호 의뢰된 내부거래는 없는가?(전문기관 사전 승인 시 또는 분석결과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가능)
- 자체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의 경우, 자체기관은 비영리법인인가? 시험분석결과보고서는 제출되었는가?
- 전문가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전문가가 아닌가?
-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는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었는가?
- 회의장소와 회의비 집행장소, 집행시간 확인(원거리, 동일 시간대, 23시 이후)
- 특허 출원·등록비를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지 않았는가?(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로 집행)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비 집행 FAQ

Q17

[과제종료일 이후 학회]
연구기간 이후 학회 참석 가능한가요?

A17. 불가능합니다.
연구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 학회등록비는 당해 연구기간까지의 부분만 인정이 됩니다.

Q18

[전문가활용비 지급]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의 박사과정생에게 전문가
자료료 지급이 가능한지요?

A18. 불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서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하고 전문가활용비를 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때 최소단위 부서는 대학의 경우 "학과"를 의미합니다.

최소단위 부서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말함

Q19

[특허정보조사 분석비]
특허정보조사 분석비는 어떠한 용도로 사용 해야 하나요?

A19.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 재산 창출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주로 특허정보 조사 및 분석 목적으로 변리사 등 특허전문기관에 지급됩니다.

참고로 특허출원비 및 등록비는 간접비 항목이므로 직접비인 특허정보조사 분석비에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Q20

[학회취소수수료 집행여부]
학회 축의 일방적인 일정 변경으로 환불받지 못한 참가비는 집행 가능한가요?

A20. 가능합니다.
학회 축의 일방적으로 날짜와 장소를 변경한 문서 및 관련 증빙 내용 등을 비치하고 변경된 일정에 학회에 참석할 수 없는 사유가 적정하여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연구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활동비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비 집행 FAQ

Q21

[국외여비-여행사수수료]

해외 학회 참석을 위해 항공권 예매를 하던 중 항공권이 매진되어 부득이하게 예약 대행업체를 통해 항공권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항공료 외 여행업무 취급수수료가 추가로 발행했는데 국외 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요?

A21. 가능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항공료 외 여행사로 지급되는 대행 수수료는 연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invoice상에 항공료(실비)와 여행사수수료를 구분하여 수취하고 여행사수수료에 대한 금액은 세금계산서(또는 카드매출전표)를 증빙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Q22

[회의비]

회의록 작성과 관련하여 양식이나 조건이 있나요?

A22. 양식은 따로 없으며, 회의록 내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Q23

[회의비]

연구활동비 회의비 집행과 관련한 사용용도는 어떻게 되나요?

A23. 외부기관 참석 하에 업무 관련 회의를 하면서 발생하는 식비, 다과비 등에 사용되는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은 식비, 다과비라도 단일기관 소속직원들 간의 회식비, 거래처와 관계개선을 위한 접대비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Q24

[출장비]

2023년 1월부터 참여 예정인 연구원이 같은 해 1월에 개최되는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학회등록비와 항공권을 2022년 12월에 연구비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출장 여비 처리에 문제가 될까요?

A24. 사업비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단계내 집행이 아닌 단계가 종료되고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판정을 받기 이전에,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초과하여 자체자금으로 선진행한 금액은 다음단계 연구개발비로 요청할 수 없습니다.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연구수당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Check-list

- 사업계획서상 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은 없는가?
- 인건비를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 실질행 인건비(불인정 인건비도 제외)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았는가?
- 기여도 평가, 총괄책임자의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되지 않았는가?
- 참여연구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없는가?
- 연구수당을 임금과 통합하여 지급한 금액은 없는가?
- 개인별 지급된 연구수당이 총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가?
- 전문가 평가결과 서류 등을 제출하였는가? 평가 결과로 감액 또는 미지급 되어야 하는 금액을 집행한 금액은 없는가?
- 연구원별 계좌이체 증명을 제출하였는가?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수당

연구비 집행 FAQ

Q25 [연구수당 증액]
현재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박사 후 연구원을 추가로 채용하여 인건비를 증액했는데 이 연구원에게 지급하기 위한 연구수당을 증액할 수 있나요?

A25. 불가합니다.
인건비를 당초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증액 할 수 없습니다.

Q26 [연구수당 집행시기]
연구수당 집행은 언제 가능한가요? 사업 중간에도 집행이 가능한가요?

A26. 연구수당 지급시기는 기관별로 연구수당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근거자료를 구비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구착수 시점에 연구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는 불인정기준에 해당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Q27 [연구수당 감액]
협약 시 책정된 인건비가 감액되어 협약을 변경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는 당초 총 인건비의 20% 유지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드시 감액된 인건비 비율만큼 연구수당도 감액되어야 하는지요?

A27. 감액해야 합니다.
인건비가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며, 실사용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경우 불인정 됩니다.

Q28 [퇴사참여인력 연구수당 지급]
과제 진행 중 퇴사한 참여연구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A28. 가능합니다.
해당 과제를 참여했던 인력에 대해서는 기여도 평가를 통해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bakertilly
우리회계법인

간접비

Check-list

- 최초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은 없는가?
- 영리기관이 간접비를 일괄 흡수하여 집행하지 않았는가?
- 과제와 관련성이 있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인가?
-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하지 않았는가?
-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고시비율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지 않았는가?

IV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간접비

bakentilly
우리회계법인

연구비 집행 FAQ

Q29

[간접비 증액]

간접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가 부족한데 간접비 증액이 가능한가요?

A29. **간접비 비목 예산한도 내에서** 지식재산출원/등록비에 대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약시 산정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을 간접비 불인정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간접비 계상가능 한도 내에서 증액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Q30

[간접비 징수시기]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간접비 징수를 3차 교부금때 징수하여 되는지요?
(간접비는 2차, 3차 간접비 지출을 3차에 한꺼번에 지출이 가능한가?)

A30. 징수시기는 따로 제한이 없으나 연구개발기간 내 사용이 원칙입니다.

Q31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

간접비를 직접비로 변경하여 사용 가능한가요?

A31. 간접비의 감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협약 상대방에게 통보함으로써 변경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단, 직접비로 변경하는 경우 연구수당 증액은 불가하며,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THANKYOU

bakentilly
우리회계법인

정산설명회 만족도 설문조사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03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세상을 바꾸는 기록의 힘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방법



2024. 8.



Contents



- 1st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2nd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 방법
- 3rd 연구노트 작성 우수 사례
- 4th 연구노트 판례
- 5th 교육 내용 요약(Summary)
- 6th 연구노트 포털

Chapter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1-1. 연구노트?

01 · 연구노트?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연구노트' 란?

- » "연구노트"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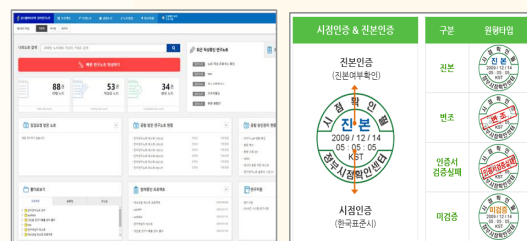
▶ 서면 연구노트란?

- »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 »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 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
- »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 서명·날짜 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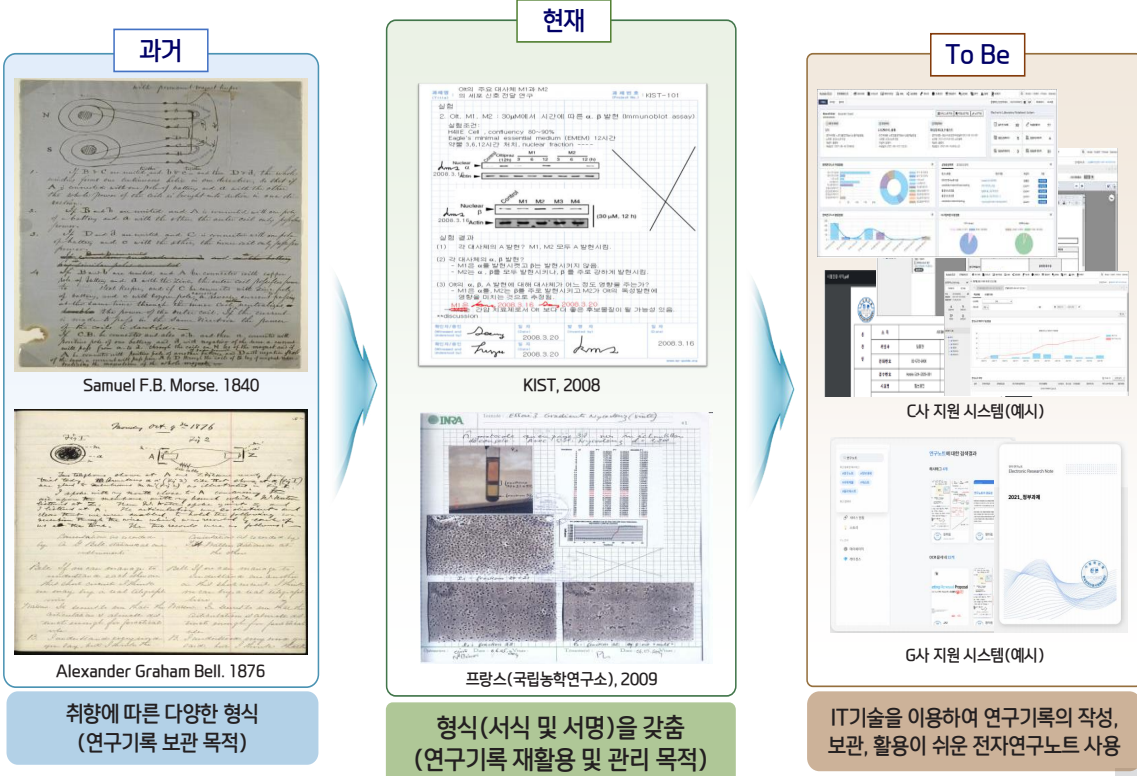
▶ 전자 연구노트란?

- » 전자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



01 · 연구노트 발전 과정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5/69

Chapter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1-2. 관련 법령 및 지침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1/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 제·개정 현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021.1.1.) 및 연구노트 지침 개정

구분	기초(←2020.12.31.)	변경(2021.1.1.~)
관련 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1251호, 2021.1.1., 폐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제17343호, 2021.1.1.,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297호, 2021.1.1., 시행]
관련 조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조(합의의 체결)제1항제1호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제1항 제28조(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1항 제33조(연구개발사업의 관리)제1항 제33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제2항,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5조(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및 활용 촉진)제1항, 제2항
관련 지침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4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4호, 2021.1.1., 시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2021.1.1., 일부개정)

지침 조항	변경 내용
제2조(정의)제4호	이른 '임의자' → '선정' '확인자'
제3조(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전체 대상
제3조(연구노트의 요건)	전자연구노트 '확인자'의 전자서명인증 요건 삭제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시기)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확인자'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서로 대체 가능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제항)	해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 가능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제1항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제1항	기초연구 연구노트 열람을 요청한 경우 열람권이 보장되도록 노력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제2항	연구개발성과 제출,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정보보호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의재산권 소멸 이후에도 열람
제11조(연구노트의 열람 및 공개)제12조(연구노트의 폐기)	외부 공개 및 폐기 시 관련 위험의 안전을 위해 지체 없이 폐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2022.1.1., 일부개정)

연구노트 요건 및 작성 방법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4호]

~ 2020년

- 기록자-점검자의 서명인증 가능
-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의 공인된 자동기록 가능
-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가능

전자연구노트

서면연구노트

- 기관명, 일련번호, 연구과제명 및 각 장에 꼭 반복이 포함된 형태
- 기록자-점검자의 서명 및 날짜
- 그 밖에 별도로 정하는 사항

연구노트 작성 방법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44호]

~ 2020년

- 과제별/생애주기별 연구노트 작성
- 내용의 위·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 작성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
- 작성 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 및 날짜를 기재
- 반공간은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
- 장기간 보존되는 활자로 작성

전자연구노트

서면연구노트

- 작성 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 및 날짜를 기재
- 반공간은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
- 장기간 보존되는 활자로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102호]

2021년

-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가능
- 기록한 날짜와 시간의 자동기록 가능
- 기록의 위·변조 확인 가능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수립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2022년 ~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 수립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

7/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2/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4.7.24.) (법률 제20057호, 2024.1.23., 일부개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생략>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4.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7.2., 타법개정)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기록·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할 수 있는 연구노리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8/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3/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사람(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연구노트"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로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5. <삭제, 2022.1.1.>
 6. <삭제, 2022.1.1.>
 7. "기록자"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8. "확인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 대상문서의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삭제, 2022.1.1.>
6. "서면연구노트"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록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삭제, 2022.1.1.>

9/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4/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을 활용하여, 연구노트의 작성·보관·관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성실히 작성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인센티브 제공 등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 유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활용하여야 하며, 연구자를 통제할 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 ① 연구자는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0/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5/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 <기존, ~ 2021.12.31.> <일부개정, 2022.1.1. ~>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3.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② 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및 각 장에 쪽번호가 적힌 제본된 형태일 것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 및 기록·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 것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노트의 인정 범위(매체의 종류) 확대>
 (기존) 서면연구노트, 전자연구노트 →
 (개정) 서면연구노트, 전자연구노트, 음성, 영상 등

<전자, 서면연구노트의 구체적인 요건 삭제>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하도록 개정

11/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6/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 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삭제, 2022.1.1.>

⑥ 기록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작성한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서면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에 해당날짜와 서명을 기재할 것
2.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할 것 <삭제, 2022.1.1.>

12/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7/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2호, 2022.1.1., 일부개정)

제9조(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

- ①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 ② 그 밖에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의 소유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에 따른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2024.7.24.)(법률 제20057호, 2024.1.23., 일부개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략>
-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4.7.10.)(대통령령 제34657호, 2024.7.2., 타법개정)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3/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8/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 2024.7.10.)(대통령령 제34657호, 2024.7.2., 타법개정)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다.
2.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 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비율 및 연구개발성과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다.

제3조(연구개발성과)

-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무형의 성과'란 다음 각 호의 성과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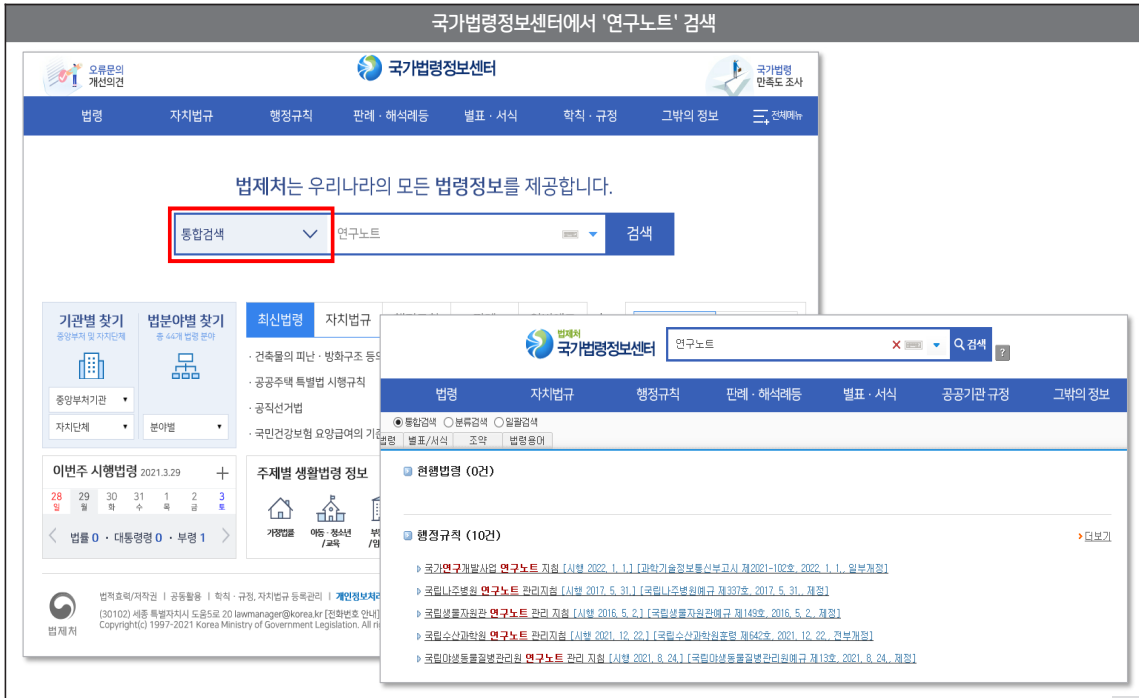
- | | | | |
|--|-------------|---------|---------------|
| 1. 제품 | 2. 시설·장비 | 3. 논문 | 4. 특허 등 지식재산권 |
| 5. 법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의 원문 | | | |
| 6.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 또는 파생된 기술의 요약 정보 | 7. 생명자원 | | |
| 8. 소프트웨어 | 9. 화합물(化合物) | 10. 신제품 | 11. 표준 |
| 12.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성과에 준하는 유형·무형의 성과 | | | |

14/69

01 · 연구노트 관련 법령 및 지침(9/9)

1. 연구노트 지침 및 제도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1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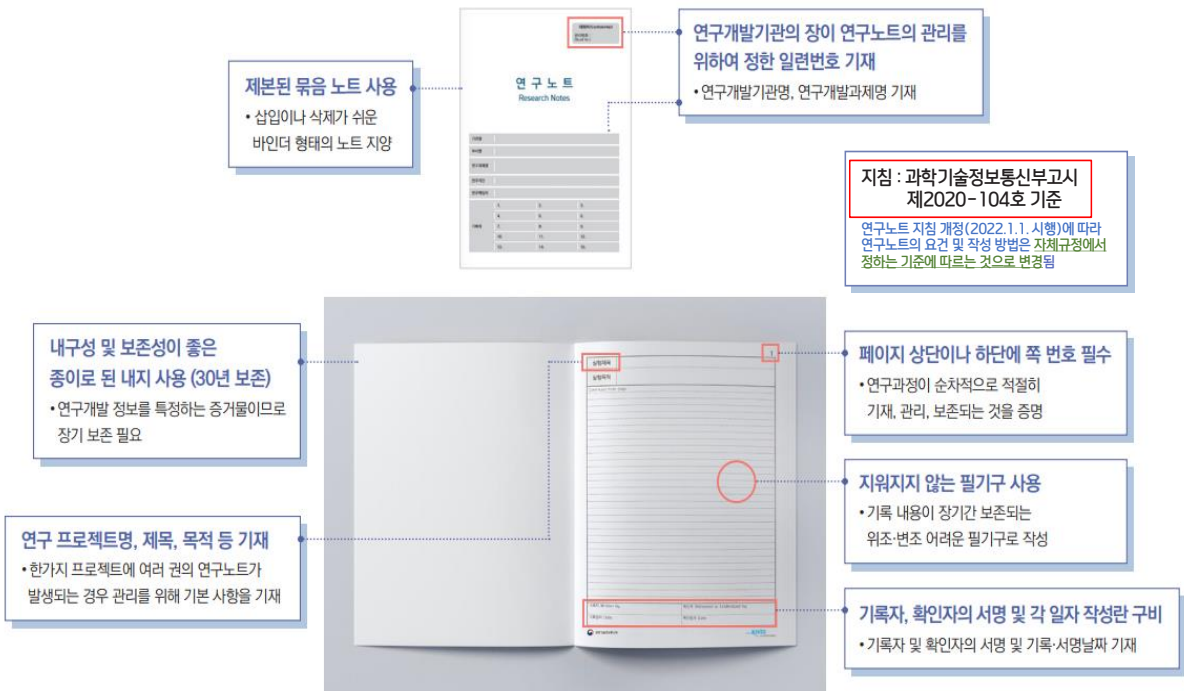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2-1. 요건 및 작성방법

02 · 서면 연구노트 요건 - 물리적 요건(권고사항)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17/69

02 · 전자 연구노트 요건(권고사항) 및 유용성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전자연구노트' 는?

· 다양한 자원으로부터 과학적 내용을 결합하고 문맥적 주석을 허용하며 검색, 수집, 협연할 수 있는 법률적 보안 시스템이며,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도구, 협연과 지식을 공유하는 지식 저장소, 자원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도구, 법률과 규제를 만족시키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

☐ 전자 연구노트의 요건(권고사항)

- ▶▶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가능
- ▶▶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 ▶▶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 전자연구노트 유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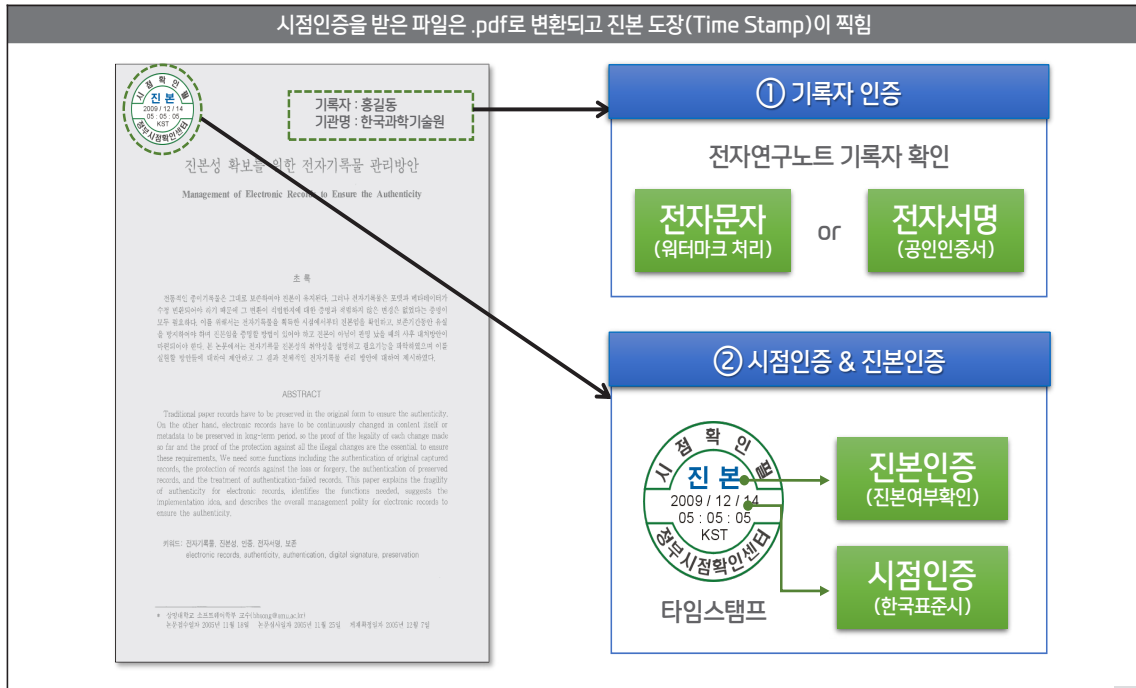
- ▶▶ **사용의 편의성:** 편리한 입력 방식, 작성 일시와 기록자의 서명 자동 입력, 시점인증 등
- ▶▶ **검색의 용이성:** 많은 양의 정보 보관과 정리가 간편하고 특정 자료의 검색이 용이함
- ▶▶ **정보 공유의 용이성:** 시공간의 제약 없이 정보의 기록이 가능하며, 다수 연구자들과 정보 공유에 용이
- ▶▶ **정보의 재사용성:** 과거 자료를 활용하거나, 실험의 변경된 부분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어 연구노트 기록 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신속한 정보 정리를 통해 연구 속도를 증가

18/69

02 · 전자 연구노트 - 시점 인증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시점 인증 및 위·변조 방지 프로세스 - Time Stam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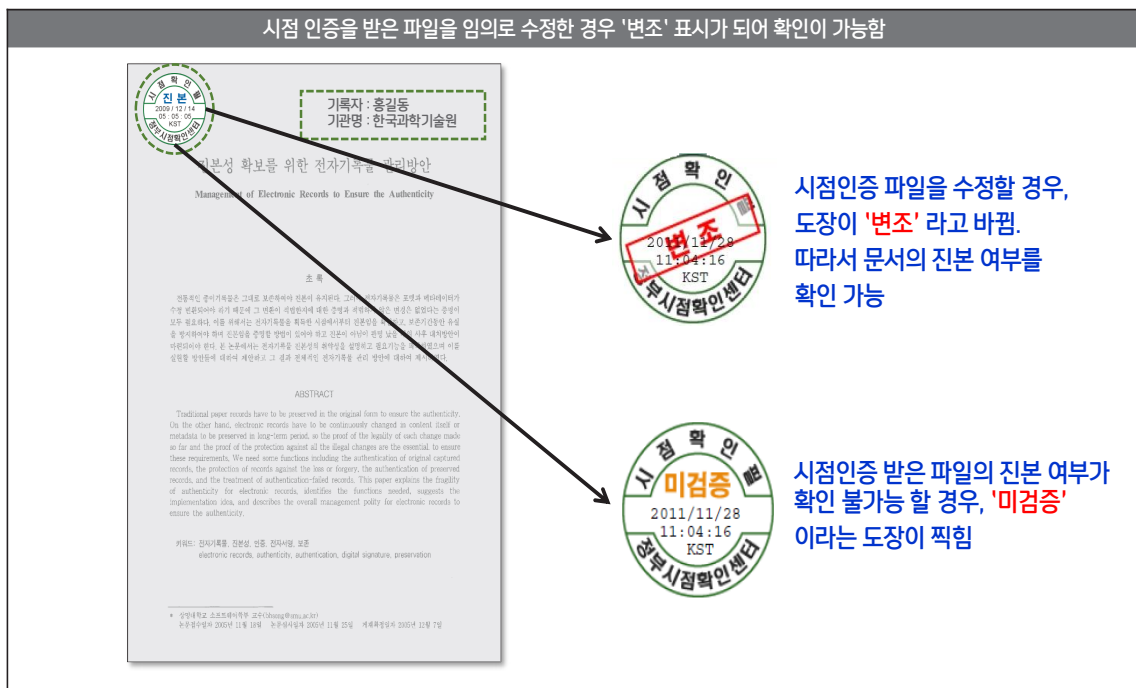


19/69

02 · 전자 연구노트 - 위·변조 방지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시점 인증 및 위·변조 방지 프로세스 - 미검증 또는 변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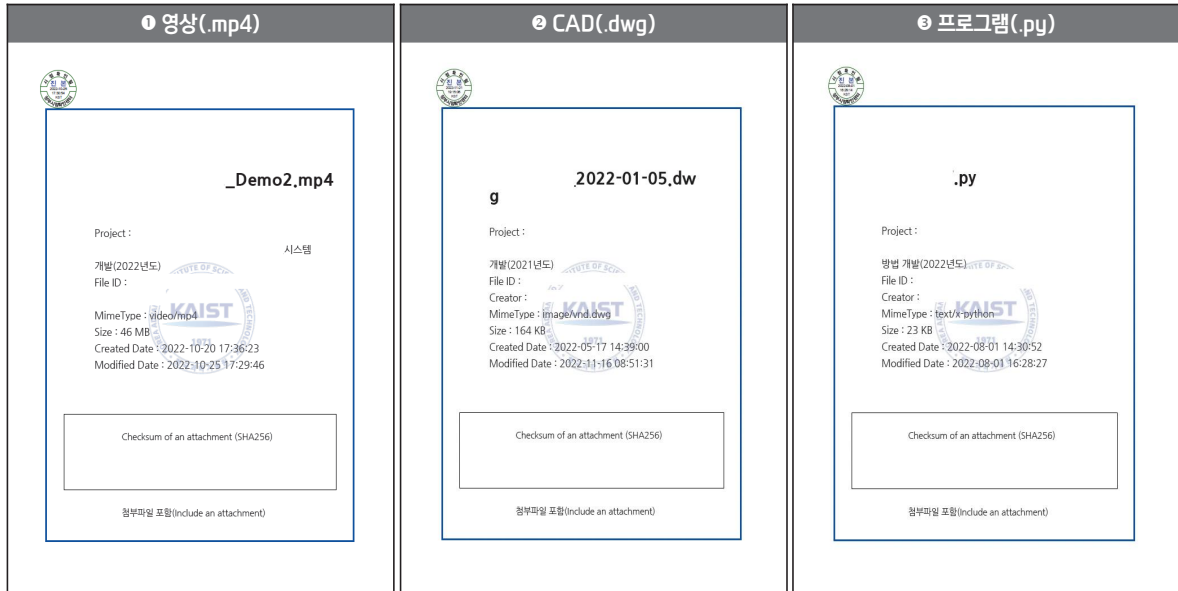


20/69

02. 전자 연구노트 - 연구노트 자율화 사례(KAIST)

2. 연구노트 작성방법

-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을 활용하여 ① 영상, ② CAD, ③ 프로그램을 연구노트로 활용한 사례
 - » [규정 개정] '혁신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식의 연구노트 작성이 가능하도록 규정 개정** 추진 중
 - » [전자연구노트] 연구자들에게 **다양한 타입의 전자연구노트** 업로드를 권장 및 **시점 인증**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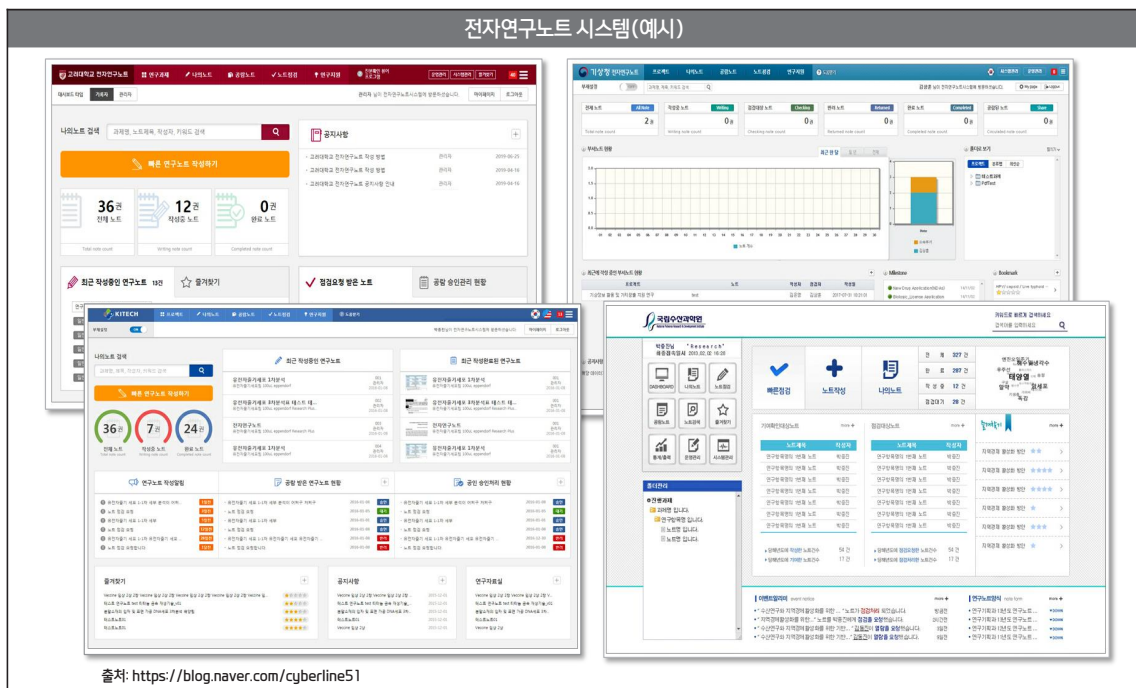


21/69

02. 전자 연구노트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예시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예시



출처: <https://blog.naver.com/cyberline51>

22/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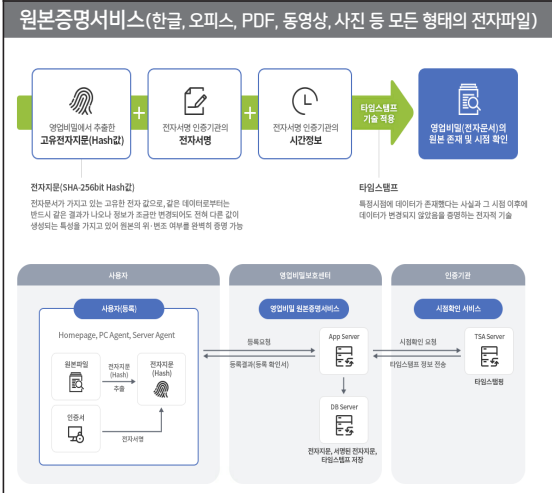
02 · 전자 연구노트 - 분쟁 시 기술개발 사실 입증 유사 서비스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한국지식재산보호원) ▶ 기술자료 임치 제도(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근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영업비밀 원본 증명) ① 영업비밀 보유자는 영업비밀이 포함된 전자문서의 원본 여부를 증명받기 위하여 제9조의3에 따른 영업비밀 원본 증명 기관에 그 전자문서로부터 추출된 고유의 식별값을 등록할 수 있다.

근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기술자료 임치제도) ① 수탁·위탁기업(수탁·위탁기업 외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을 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수치인"이라고 한다)과 서로 합의하여 기술자료를 임치하고자 하는 기업(이하 "임치기업"이라한다)의 기술자료를 임치할 수 있다.



23/69

02 · 연구노트 작성 방법 - 작성기준 및 내용(권고사항)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1 연구노트 작성 기준**
 - ▶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 (기존) 연구개발과제마다 연구노트를 구분하여 작성 → ('22 변경) 자체규정으로 정함
 -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 ▶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 ▶ 자체규정에 공동 작성 가능하도록 규정한 경우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 가능
 - * 이 경우 작성 부분 끝에 본인과 확인자의 서명을 받고, 타인은 구분선을 표시하고 기재
- 2 연구노트 작성 내용**
 - ▶ 연구노트 작성 시 객관적인 사실을 위조·변조없이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 3 연구노트 작성 요령**
 - ▶ 주석, 도면, 공식, 규모, 실험결과 등을 포함하여 연구진행 및 활동에 대한 사실을 기록
 - ▶ 메모했다가 노트에 옮기는 것보다 바로 연구노트에 기재
 - ▶ 포스트 잇 사용 자제 (자료 부착 시 떨어지지 않게 고정, 서명과 날짜 기재)



24/69

02 · 연구노트 작성 내용 (예시, 권고사항)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연구과제 프로젝트 관리 측면에서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연구개발 과정을 상세하게 작성하는 방법으로 연구노트를 관리(예시)	
1. 연구의 착상 및 목적	연구의 착상(아이디어), 목적, 방법, 예상 결과 기록 - 착상의 영감은 어디에서 얻었는가?, - 선행연구에 대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는가? - 기술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
2. 재료	사용되는 재료, 장비, 유기물, 측정조건 등에 대한 목록을 작성한 후 상세히 기록 - 재료 : 원료 및 성분 등, - 장비 : 회사명, 모델번호, 일련번호, 브랜드명, 반응성 등 - 유기물 : 구입처, 출하상태 등, - 측정조건 : 온도, 시료 상태, 파장 등
3. 실험의 방법	연구노트의 첫 번째 목적은 실험하여 얻은 데이터를 추적하여 과학적인 해석을 얻어내는 것 - 연구노트는 실험 절차에 따라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함 - 다른 연구자가 똑같은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실험과정마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작성할 것
4. 실험 진행과정의 기록	실험 경과, 상황 등을 바로 기록하는 습관을 통해 기록 누락 방지와 실험에 대한 집중력을 높임 - 각 페이지에 알기 쉬운 표제를 붙여 해당 실험에 대한 내용 범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시약의 양, 조작, 반응 조건(온도, 시간), 관찰 사항(색, 발열) 등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 - 전문적, 학문적 약어는 표로 정리하고, 기호, 그림으로 간결히 표현하며 과정을 상세히 기록 - 시료의 소비, 기구의 파손, 그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
5. 실험결과의 기록	실험결과는 시간적인 변화, 구체적인 절차 등을 알 수 있게 기록하여 객관성을 갖도록 기록 예) 푸른 리트머스지에 식초를 떨어뜨렸더니 붉어졌다. (X) 우리봉으로 농도 10%의 식용 식초(000회사 제품, 00TM을 0배 희석) 1방울을 세로 1cm, 가로 3cm의 푸른 리트머스 종이에 떨어뜨렸더니, 스며든 부위가 3초 내에 붉어졌다.(O)
6. 고찰	실험의 종료 후 실험 계획대로 수행 여부, 실험 목적 달성 여부, 실험 결과의 의의, 다른 방법 적용 여부, 가설 실증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고찰 작성
7. 참고사항	만약을 대비하여 실험을 실시한 장소 등 주변 환경에 대해 기록 - 환경 데이터(실험실의 기온, 습도, 지역의 기우 등), 전자 매체, 바인더, 샘플 등의 보관 위치 등을 기록

25/69

02 · 연구노트 작성방법 - 연속기재(권고사항)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연구노트 기록이 지연(중지)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연구노트에 기재

연구노트 연속 기재 원칙

발명을 완성시키기 위한 일련의 행동이 특정기간 동안 계속되었음을 날짜와 사실을 통해 증명해야 함

미국 Anderson vs. Crawther 사건(1965년)

(미국특허법은 선발명 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처음으로 발명을 구현한 진정한 발명자를 특정하고, 진정한 발명자의 착상일을 발명일로 결정하여, 발명의 우선권 입증 가능)

- ▶ 실험 중 설명되지 않는 두 달 동안의 공백이 발명일의 입증을 부인하게 한 사례
- ▶ 연구에 맞추어 기록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연구노트에도 사유를 진술
- ▶ 연구가 실제로 언제 완료 되었는지를 표시해야 하고 기록이 지연된 이유를 설명

26/69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2-2. 관리 및 활용방법

02 · 연구노트 관리 방안 - 역할별 관리 방법(예시, 권고사항)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역할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연구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연, 기업 등의 기관장(대표) 및 연구노트 담당부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노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지침) 제정, 주관부서 및 담당자 지정 » 연구결과로 습득한 노하우를 연구노트를 통해 관리·활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기관의 연구분야 및 여건에 맞는 연구노트의 제작, 배포, 관리 및 보관(30년) » 연구노트 보급을 위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연, 기업 등의 연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실 내 연구원에게 연구노트의 중요성 및 작성방법 교육 » 연구원 간 지식 공유를 위한 연구노트 활용 권장 » 연구 과정의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노트 작성 및 연구노트를 통한 프로젝트 관리 » 연구책임자도 연구노트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
 연구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공공연, 기업 등의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자가 연구내용을 잘 이해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작성 » 연구노트를 기재요건에 맞추어 기록하며, 과제완료와 함께 연구실 또는 기관 담당부서에 제출 » 작성한 연구노트는 정기적으로 확인자의 서명 必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요약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연구개발 ① 성과창출 및 기술 보호, ② 분쟁 대응, ③ 기술 이전, ④ 성실 연구에 대한 증빙으로 활용

<p>①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기술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허 명세서, 논문, 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 가능한 중요 연구실적 데이터로 활용 ·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연구개발 중인 기술이 제3자에게 유출되어 모인(횡령) 특허출원이 발생하는 경우, 특허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 정당한 권리자 주장을 위한 입증 자료로 활용 	<p>③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가치 격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이전 시 연구 재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어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적 가치 격상 ·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서 특허, 논문 만으로는 기술재현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연구노트 유무에 따라 기술이전 여부 및 기술료를 결정
<p>② 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보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기관 또는 기업에서 연구개발 중이거나 개발 완료한 기술에 대하여 타사에서 특허 침해소송 제기 시 특허법 제103조(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따른 무상 통상실시권 주장 증빙자료로 활용 	<p>④ 성실한 연구에 대한 증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개발 단계평가 과정에서 연구기간 내 연구개발과 관련된 자료 및 각종 세부적인 데이터가 충실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의 연구활동 증빙으로 연구노트 등 작성·보관 의무화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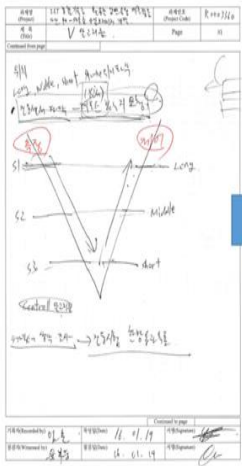
29/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특허출원(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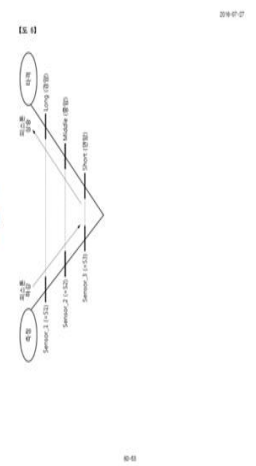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① 연구노트를 활용한 특허출원(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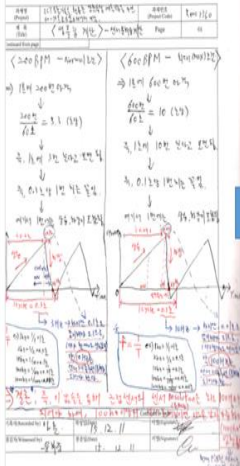
2016년 연구노트 우수성과 연구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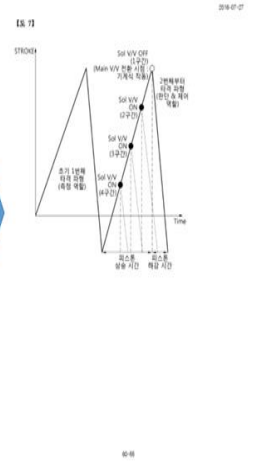
〈 연구노트 내용 〉



〈 실제 출원된 특허 내용 〉



〈 연구노트 내용 〉



〈 실제 출원된 특허 내용 〉

30/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특허출원(예시)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① 연구노트를 활용한 특허출원(사례 2)

해외 사례(예시)

31/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① 연구노트를 이용한 '임시명세서' 제도 활용으로 신속한 특허출원 가능

특허청 '임시명세서' 제도 안내

1 정형화된 서식의 명세서 없이 메모, 연구노트만으로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명세서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빠른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기본

- ① 발명의 명칭
- ② 기술분야
- ③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등 특허출원 시 7가지 기재요건의 특허명세서 첨부

개선

메모, 연구노트, 논문 원본 그대로를 임시명세서로 인정

출처: 특허청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kipoworld2>)

임시명세서 출원시 및 보정서 제출 방법

출원 청구범위제출유예 제도와 연계, Free-type 명세서 첨부 후 출원서 제출
 - 첨부 가능한 확장자: pdf, ppt, pptx, doc, docx, hwp, hix (전일 파일만 가능)
 - *특유의 압축파일은 확장코드 첨부 가능성이 있어 첨부 불가

보정 특허출원일부터 1년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임시명세서 보정
 - 전문보정, 원본만 가능. 임시명세서 보정 이후 다시 보정할 경우 명세서 등 보정으로 제출
 - 기한 내 임시명세서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다음 날에 취하한 것으로 간주

임시명세서 처리절차

pdf, ppt, docx, hwp 파일 첨부하는 경우

이미지 파일 첨부하는 경우

32/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논문(예시)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① 연구노트를 활용한 논문발표(사례 3)

2016년 연구노트 우수성과 연구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Handwritten research notebook page showing a table with columns '주변', '시', 'S', 'D', 'V' and rows '1', '2', '3'. The table contains 'X' and '0' marks. There are also diagrams and handwritten notes in red and blue ink.

〈 연구노트 내용 〉

Printed research paper titled "Displacement Measuring System of Hydraulic Cylinder using Proximity Sensor". The paper includes an abstract, introduction, and technical details.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notebook to the paper.

〈 실제 발표된 논문 내용 〉

Handwritten research notebook page with diagrams and notes.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notebook to the paper.

〈 연구노트 내용 〉

Printed research paper titled "1 논문". It includes a title, abstract, and technical details.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notebook to the paper.

〈 실제 발표된 논문 내용 〉

33/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시제품(예시)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① 연구노트를 활용한 시제품 제작(사례 4)

2016년 연구노트 우수성과 연구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Handwritten research notebook page with a diagram of a cylinder and notes.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notebook to the prototype.

〈 연구노트 내용 〉

Physical prototype of a hydraulic cylinder, showing the cylinder body and mounting brackets. A blue arrow points from the notebook to the prototype.

〈 연구노트의 연구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작된 연구 성과물 〉

34/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기술이전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③ 기술이전 시 연구노트는 중요한 기술 자료로 활용

연구노트는 기술이전 협상에서 중요한 증빙 자료 등으로 활용

- ✓ 기술이전 과정에서 연구개발 정보나 노하우가 기록된 **기술자료(연구노트) 요청 빈도 높음**
- ✓ 연구노트가 잘 기록·관리되어 있다면 **기술이전 협상 시 유리**

▶ ③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권을 매도하거나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하는 하는 경우 가치 인정 증빙

연구노트는 기술 재현을 위한 중요자료로 기술이전 시 요청하는 사례가 많음

- ✓ 기술도입자가 연구결과에 대한 **실사과정에서 요청하는 중요문서가 연구노트**
- ✓ 기술이전 자료로 논문이나 특허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多**
- ✓ **기술 재현**을 위해 실험을 완성한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총체적인 기록이 담긴 연구노트 필요



남을 위함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

일기는 추억이지만, **연구노트는 연구 과정의 분명한 기록으로써 명예, 돈, 또는 자기방어가 될 수 있음**

35/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기술이전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③ 연구노트는 기술 재현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

연구노트는 기술 재현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내용을 담고 있음



기술을 **재현**할 수 있는가?

"재현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연구노트**"

36/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기술이전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③ 연구자는 연구노트에 노하우를 기록 → 기술이전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연구노트로 인해 기술이전 금액이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

화학 분야

바이오 분야

"3배에서 최대 10배까지 증가!!"
- Melvin Jager -

"노하우에 대한 기록이 없다면 기술이전 불가"
(Homer Blair, Professor Emeritus of Franklin Pierce Law Center)

· 기술이전, 라이선스 계약 시 영업비밀이나 노하우가 포함되면 가치를 3배에서 10배까지 올릴 수 있다.
(Melvin Jager)

· 특히 화학이나 바이오 분야는 노하우가 없다면 기술이전이 성립되지 않는다.
(Homer Blair, Professor Emeritus of Franklin Pierce Law Center)

37/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단계평가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④ 단계평가: (기존) 연구 종료 후 성실성 증명 → (변경) 단계평가 과정에서 '수행과정' 평가 반영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원안의결, 2023.12월)

공개

의안번호 제 2 호
심 의 2023.12.27.
연 월 일 (제96회)

심 의 자 량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의 운영위원회

개정안 [2024. 1. 1. 시행]

제 출 자
제 출 연월일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

2023.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nistry of Science and ICT

연구 수행과정 평가

기존	<p>(관계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간·최종평가: 성과의 활용 계획·실적에 대해 평가 - 평가결과 '실패' 과제 → 성실수행 평가를 통해 제재조치 면제여부 결정 ☞ 성과평가 → (실패 시) 과정 평가 → (성실수행 인정 시) 제재조치 면제
↓	
변경	<p>(관계 법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계·최종평가: 연구 수행과정과 성과를 동시에 평가 - '수행과정'에 대한 평가를 명확히 규정 ☞ 성과평가+과정평가 → (극히 불량 등급) 중단 및 제재조치

연구 수행과정 평가표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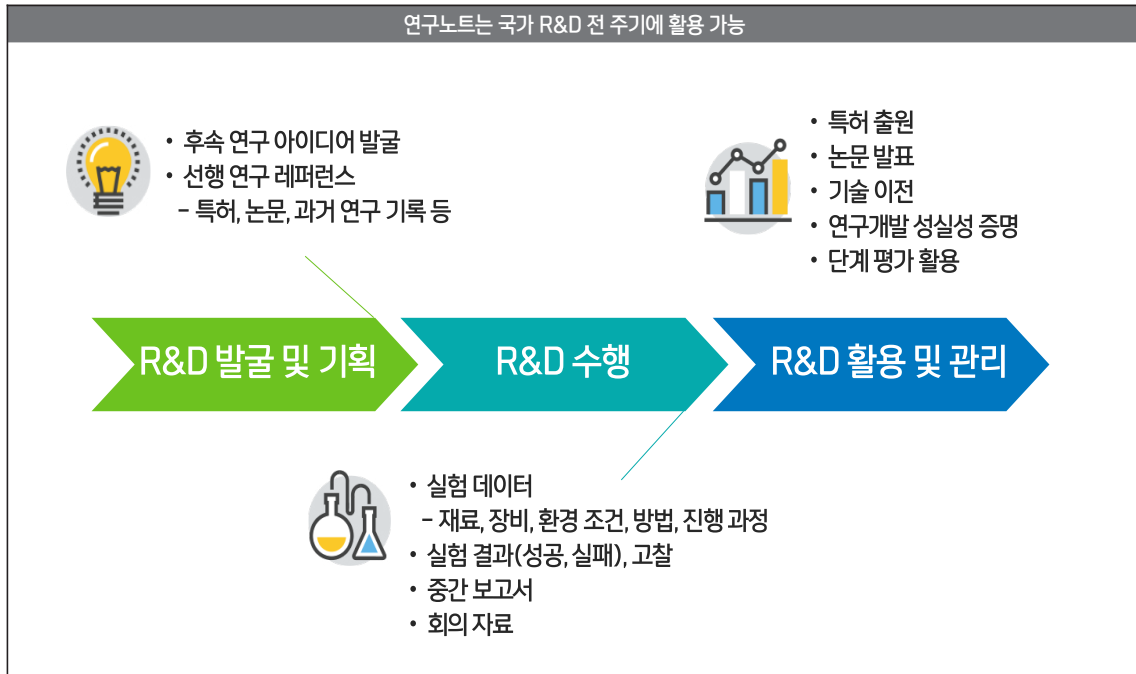
평가부문	평가항목(배점)	세부 평가 지표	비고
연구수행 과정 (20)	연구수행 방법의 적절성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과정의 적절성 - 연구노트 작성·관리 자체규정 지침 수립 여부 및 작성의 충실성 - 각종 데이터 구축 및 운영의 체계성·충실성 - 로드맵 수행의 적절성(계획 대비 일정, 연구비 집행, 시설·장비 활용, 인력참여, 역할분담 등) - 과제 수행의 위험요인 및 연구환경변화에 관한 관리여부 	과정평가 의견 명확히 제시 필요

38/69

02 · 연구노트 활용방법 - R&D 단계별 활용 체계

2.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방법

▶ 국가 R&D 단계별 연구노트의 활용



41/69

Chapte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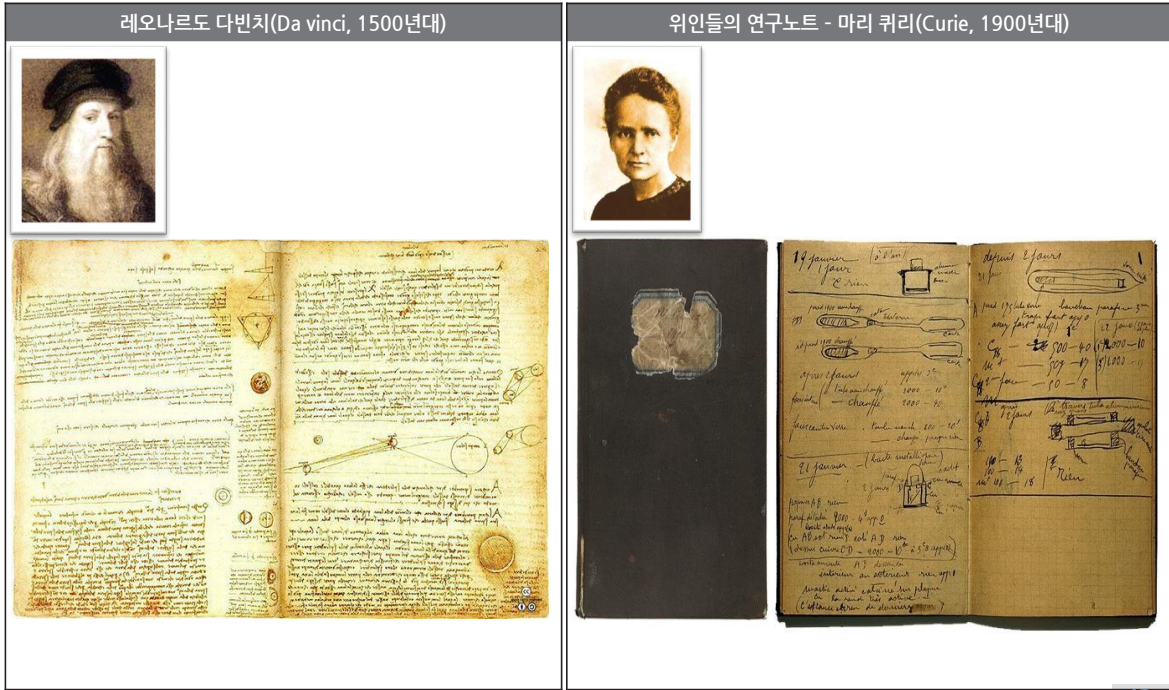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3-1. 해외 연구노트 사례

03 · 위인들의 연구노트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1500년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1900년대 마리 퀴리의 기록(연구) 노트



43/69

03 · 해외 연구노트 사례 - 일본 대학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일본 대학의 연구노트 사례(2004년)

일본 대학의 연구노트

실험 1 1,2,3,4-Tetrahydrocarbazole

시클로헥사논 [98.14] d 0.947 3.9 g (40 mmol) 4.1 ml
 フェニルヒドラジン [108.14] d 1.099 4.3 g (40 mmol) 3.9 ml
 (용기: 100 ml, 용액: 10 ml)

용액 15 ml

시클로헥사논
 AcOH (약 10 ml)
 PNNH₂ (용기를 씻기 위해)
 沸石 5粒, 空瓶冷却管をつける

용액
 AcOH bp 117-118 °C
 Bath temp 140 °C
 30 min

100 ml 비어카-를 옮기, 100 ml 비어카-를 옮기
 100 ml 비어카-를 옮기, 100 ml 비어카-를 옮기
 100 ml 비어카-를 옮기, 100 ml 비어카-를 옮기

1,2,3,4-Tetrahydrocarbazole mp 115-116 °C

실험 노트의 방법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 히터로 건조시키기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용액과 로트가 섞이도록 휘젓기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2004/04/12 (목) 20°C

시클로헥사논 [98.14] 3.93 g (40.0 mmol)
 フェニルヒドラジン [108.14] 4.32 g (39.9 mmol)
 용액 15 ml

13:20 시클로헥사논을 플라스크에 넣고, 용액 15 ml를 첨가한 후 (색상 변화 없음)
 13:25 페닐히드라진을 플라스크에 첨가한 후 (색상 변화 없음, 용액이 약간 투명해짐)
 13:40 가열 시작
 13:45 냉각 (140 °C)
 13:50 용액이 투명해짐 (색상 변화 없음)
 14:15 가열 종료 (색상 변화 없음)

13:20 시클로헥사논을 플라스크에 넣고, 용액 15 ml를 첨가한 후 (색상 변화 없음)
 13:25 페닐히드라진을 플라스크에 첨가한 후 (색상 변화 없음, 용액이 약간 투명해짐)
 13:40 가열 시작
 13:45 냉각 (140 °C)
 13:50 용액이 투명해짐 (색상 변화 없음)
 14:15 가열 종료 (색상 변화 없음)

실험 노트의 방법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용액과 로트가 섞이도록 휘젓기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 히터로 건조시키기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용액과 로트가 섞이도록 휘젓기
 • 로트를 건조로에서 꺼내기

44/69

03 · 해외 연구노트 사례 - 프랑스 연구소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프랑스 국립 농학연구소(INRA) 연구노트 사례

프랑스 국립 농학연구소(INRA) 연구노트

45/69

03 · 해외 연구노트 사례 - 벨기에 대학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벨기에 Ghent 대학 연구노트 사례(2005년)

벨기에 Ghent 대학교

46/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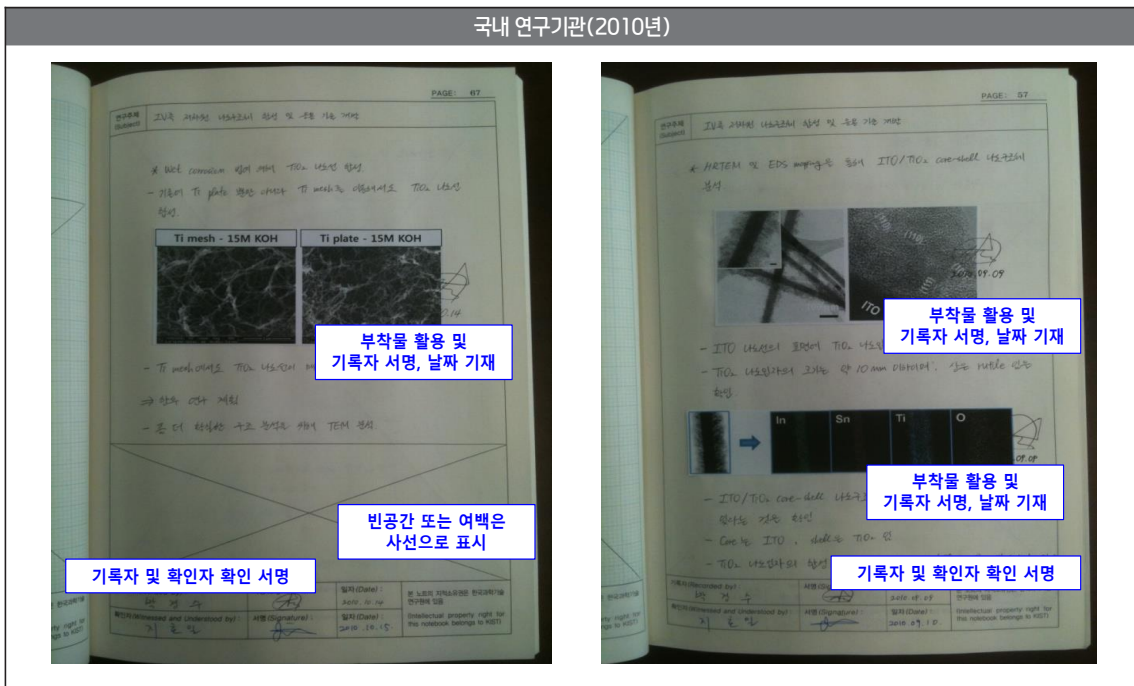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3-2. 국내 연구노트 사례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국내 연구기관 연구노트 사례(2010년)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7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7년)

각 단계별 제조과정 사진 첨부

사용한 시약 정보 및 용량

상세한 설명을 위한 사진과 그림 첨부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프로그램 설정 관련 상세 설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49/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국립축산과학원(2018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국립축산과학원(2018년)

<관리현황> 해당 과제 개요 등

버터 제조과정 및 이 때 사용된 우유, 크림의 성분분석 결과

실패 사례 및 활용방안(신제품 개발)

제조 단계 정리

제조 단계별, 참고사진

자료 소개, 제조 원리

분석방법

문헌조사 결과 정리

고찰 및 향후계획

[그림 1] 연구노트 표지와 관리현황 작성

[그림 2] 실험용 유제품 제조과정의 상세한 기록

[그림 4] 문헌조사 결과정리 및 고찰, 향후계획 기록

50/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울산과학기술원(2018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울산과학기술원(2018년)

[그림 3] 연구노트 본문 예시 1 (저 분자 물질 합성)

[그림 5] 연구노트 본문 예시 3 (유전자 조작 및 증폭)

[그림 6] 연구노트 본문 예시 4 (효소 활성 측정)

51/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한국식품연구원(2019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식품연구원(2019년)

실험 방법
참고 논문 표시

재료 입고 시 수량 체크 후 부착

납품 시 들어있는 내역서 부착

결과 raw data 정리 파일 부착

실험 주원료적

담당자 연락처 기재

학술지원 내용 정리 후 부착

52/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경상남도농업기술원(2020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경상남도농업기술원(2020년)

연구과제 등록

연구노트 기본정보

태블릿 활용 연구노트 입력

사진자료 등록

연구노트 등록

시점인증

53/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숙명여자대학교(2021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숙명여자대학교(2021년)

도표로 정리한 실험결과와 해석

Protocol 작성

지난 실험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하여 다음 실험에 적용

실용 재료, 준비과정,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기록

54/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국립축산과학원 (2022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국립축산과학원 (2022년)

실험결과 기록 시, Raw data 뿐만 아니라 통계정보, 그래프 등을 활용하고, 논이한 내용까지도 기록

제3자가 연구노트를 보고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Tip(Tip), 노하우 전달

55/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한국식품연구원 (2023년도 연구노트 작성·관리 활용 우수사례 공모전)

한국식품연구원 (2023년)

재 실험에 필요한 내용 간략하게 기입

참고 논문 부착

참고 논문 세부 정보 부착

세미나 공지

세미나 내용 정리

유정 kit 정보 부착

연구노트 연속 페이지 작성

분석에 필요한 시약 계산

수정 시 두들 그른 뒤 발탁, 이틀, 사인

공백 표시

결과 해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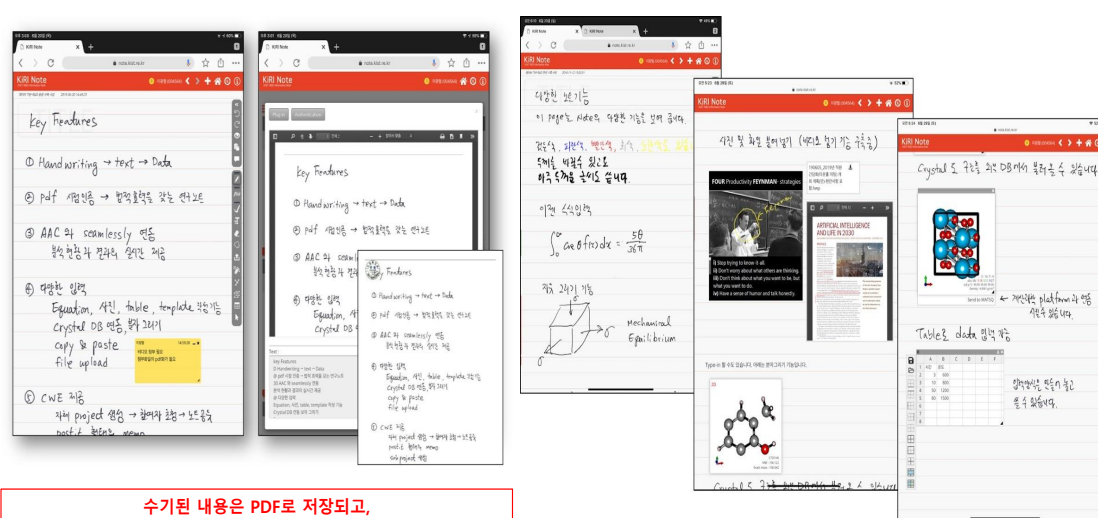
56/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국내 연구기관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R&D Informatics(KIRI) System)

KiRI Note(2019년~)



수기된 내용은 PDF로 저장되고,
시점인증을 받음으로써 법적효력을 갖는 연구노트로 인정

수기된 내용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Text화 시킴으로써,
컴퓨터가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다양한 노트 기능, 자유 그리기 기능,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붙여넣기,
외부 DB 불러오기, Table Data 입력 기능 등 제공

출처: <https://sites.google.com/view/kiri-home/home/kiri-note>

57/69

03 · 국내 연구노트 사례 - 보도자료

3. 연구노트 작성 우수사례

▶ 다쏘시스템코리아 - 실험 관리 '전자연구노트' 특허·상표권 분쟁 최소화

[인터뷰] “다쏘의 식품 특화 솔루션, PLM 신제품 개발 주기 절반으로 단축” [식품음료신문, 2023.07.17]



.....

PLM(Product Life Management)에서 한 단계 더 체계적인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도 주목**해야 한다. PLM이 상품 기획 시 요구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은 실험에 대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관리 노트를 데이터화해 초 단위로 저장**이 가능하고, 특히 **전자서명을 통한 시점 저장**으로, **향후 특허 및 상표권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16>

58/69



연구노트 판례

4-1. 국내 연구노트 판례

04 · 국내 연구노트 판례(1/4)

4. 연구노트 판례

- ▶ 직무발명보상금 판례 - 연구노트의 구체적인 발명 기록이 인정되어, 발명 보상금을 지급 받은 사례
 - » [쟁점] 피고(회사 C)가 원고(A)의 연구노트가 사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급 거부
 - » [증거 채택] 연구노트가 특허법원에서 증거자료 (갑 제4호증의 1)로 채택되어, 적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

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8나1725 판결	
특허법원	제 2 3 부 판 결
사 건	2018나1725 직무발명보상금 원고, 황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최우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6가합559129 판결
변 론 종 결	2020. 1. 31.
판 결 선 고	2020. 2.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채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가 작성한 연구노트에 발명의 핵심 구성, 문제 및 해결방안 기재

가) A이 작성한 연구노트(갑 제4호증의 1)는 그 명칭으로 "Zipper bag valve 개발 프로젝트"가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제1발명의 핵심 구성 및 제품의 개발에 발생 하는 문제 및 그 해결 과정 등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연구노트를 근거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보상금 지급 결정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A의 연구노트(갑 제4호증의 1)가 이 사건 제1발명의 출원 이후에 사 후적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A의 위 연구노트에 다양한 진공 밸브의 샘플 제작방법, 샘플 도면, 성능 테스트 결과 및 결과 원인 분석 등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위 연구노트에 기재된 날짜와 A의 주간 업무 계획, A이 샘플 제작을 위해 요청한 품의서 및 견적서에 기재된 날짜와도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A의 위 연구노트는 A이 이 사건 제1발명을 발명할 당시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04 · 국내 연구노트 판례(2/4)

4. 연구노트 판례

▶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판례 - 연구노트로 직접 연구개발을 진행하지 않음이 적발됨

- » [쟁점] 원고(회사)가 R&D를 직접수행하지 않고 외부를 통해 수행한 것으로 보여, **사업 중단(불성실),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대한 처분 취소를 요구**
- » [판결 근거로 활용] **연구노트에 원고 회사의 개발과정을 확인할 내용이 부족하여 종전 사업 중단(불성실)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결**

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924	'연구노트' 작성 미비로 자체 개발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못함
<p>서울 행정 법 원</p> <p>제 7 부</p> <p>판 결</p> <p>사 건 2021구합53924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원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피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변 론 종 결 2021. 12. 9. 판 결 선 고 2022. 1. 20.</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p>	<p>마. 원고들의 이의신청에 대해 피고는 특별 이의신청평가를 거쳐 2019. 8. 6. '연구 노트에 원고 회사의 개발과정을 확인할 내용이 부족하고, 반면 외부용역 처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연구노트 2018. 1. 15.자 내용에 따르면 외주용역 업체인 주식 회사 E에 선급 50% 지급하여 개발 진행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업 초기에 PCB 설계 및 제작 비용으로 보기에 과도한 비용을 집행하였다. 개발 대부분이 외주를 통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은 일부만을 외주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 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핵심기술인 ○○모듈, ○○모듈, ○○모듈, ○○모듈이 원고 회사 자체 개발로 진행되지 못하고 턴키형태의 외주용역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은 자체 개발하였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며 종전 사업 중단(불성실)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p>

61/69

04 · 국내 연구노트 판례(3/4)

4. 연구노트 판례

▶ 출연금 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취소 판례 - 연구노트 망실로 인한 성실 수행 증빙자료 미비

- » [쟁점] 원고(회사)는 과제 수행 후 최종보고서 제출 후 보완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 및 '불성실수행' 판정 3년의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정부출연금 전액 환수 처분에 불복하는 소를 제기
- » [판단] 원고는 **연구노트를 망실하였으나 이를 복원하지도 않았고**, 성실수행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였으나, **연구노트에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

대전지방법원_2020구합100313	연구노트 망실에 따른 '불성실수행' 판정
<p>대전지방법원</p> <p>제 1 행정 부</p> <p>판 결</p> <p>사 건 2020구합100313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 고 주식회사 A 농업회사법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손유정 피 고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부효준 변 론 종 결 2021. 3. 17. 판 결 선 고 2021. 4. 7.</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p>려한다면, 원고가 작성할 의무를 부담하는 연구노트는 해당 연구수행의 과정 및 결과를 제3자가 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실험의 일시, 목적, 환경, 절차, 내용, 결과 및 그에 대한 해석 등이 정확하게 기록되어야 한다.</p> <p>그런데 원고는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연구노트를 망실하였고 이를 복원하지도 않았으므로 이는 그 자체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더구나 원고가 성실 수행을 뒷받침할 자료라고 제시한 회계정산 감사 보고서(갑 제5호증), 월간회의 자료(갑 제7호증), PPT 자료(갑 제20호증), 특히 관련 회의자료(갑 제23호증)를 바탕으로는 위와 같이 연구노트에 기록되어야 하는 정보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고, 제3자가 그 내용을 통해 원고의 연구 성과를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도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자료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의 연구 노트 또는 그에 준하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 나아가 PPT 자료(갑</p>

62/69

04 · 국내 연구노트 판례(4/4)

4. 연구노트 판례

▶ 법인세부과처분 취소 판례 – 연구노트 부실작성으로 인해 법인세 재부과

- ▶ [쟁점] 원고(회사A)가 피고(지방국세청장B)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
- ▶ [판단] 원고(회사A)는 대표이사C에게 특허권 이전 등의 행위로 수년간 법인세 공제 대표이사C의 **연구노트에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보아** 발명자로 인정하지 않음

청주지방법원_2020구합7158	'연구노트' 작성 미비로 자체 개발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못함
<p>청주지방법원 2021. 9. 16 선고 2020구합7158 판결 [법인세부과처분 및 소득금 액변동통지처분 취소]</p> <p style="text-align: center;">전 문</p> <p>원 고 주식회사 AA</p> <p>피 고 BB세무서장</p> <p>변 론 종 결 2021. 8. 12.</p> <p>판 결 선 고 2021. 9. 16.</p> <p style="text-align: center;">주 문</p> <p>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p>	<p>3) 한편, 원고가 CCC의 이 사건 특허권 발명 입증자료로 제출한 연구노트(갑 제15호증, 을 제5호증)를 살펴보면, CCC가 회사에서 매일 작성한 업무일지(거래처요청내역, 업무상 약속 등) 중 일부 자동차 부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었을 뿐이고, 자동차 부품 등 개발을 위한 별도의 연구노트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재만으로는 CCC가 이 사건 특허권과 관련하여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을 넘어 특허법상 발명의 요건인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p> <p>설령 CCC가 '기술적 사상의 창작행위'에 일부 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든 여러 사정들과 CCC가 원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인 점, 원고가 그 동안 CCC가 발명자인 특허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출원 및 등록해온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CC가 원고와 별개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건 특허권을 발명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p>

63/69



교육 내용 요약(Summary)

05 · 교육 내용 요약(Summary)(1/2)

5. 교육 내용 요약(Summary)

연구노트란?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함.

적용 대상

»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 이외 연구개발에 대해서도 관련 지침이 준용될 수 있음.

연구노트의 형식

» 연구노트의 기록 날짜와 기록자, 그리고 위·변조를 확인할 수 있어야하며, 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 등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음. (현재는 서면연구노트와 전자연구노트를 주로 사용하고 있음.)

연구노트의 작성

- » ①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기관마다 각각 작성함
- » ② 연구자 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에 모든 연구자가 공동 작성하게 할 수 있음
- » ③ 위·변조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연구노트 권리의 소유

» 연구노트에 대한 권리는 연구노트의 작성을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예외)

65/69

05 · 교육 내용 요약(Summary)(2/2)

5. 교육 내용 요약(Summary)

서면 연구노트의 요건(권고사항)

- » ① 제본된 묶음 노트 사용(삽입이나 삭제가 쉬운 바인더 형태의 노트 지양)
- » ②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 관리를 위하여 정한 일련번호 기재
- » ③ 페이지 상단, 중단, 하단 등 쪽 번호 필수이며 기록자, 확인자의 서명 및 일자 작성란 구비

전자 연구노트의 요건(권고사항)

- » ①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기능
- » ② 기록한 날짜와 시각의 자동기록 기능
- » ③ 기록의 위·변조 확인 기능

연구노트 작성 내용(참고사항)

- » ① 연구의 착상 및 목적
- » ② 사용되는 재료, 장비, 유기물 등 상세히 기록
- » ③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실험 방법 작성
- » ④ 실험 진행 과정의 기록(실험 중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기록)
- » ⑤ 실험결과의 기록(시간적인 변화, 구체적인 절차 등을 기록하여 객관성을 갖도록 함)
- » ⑥ 실험 계획 수행 여부, 목적 달성 여부 등 고찰 기록 등

연구노트의 활용 방법

- » ① 연구개발 성과 창출 및 기술 보호(지재권 활용의 연구실적 데이터)
- » ② 분쟁 대응 및 영업비밀 보호에 활용
- » ③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 가치 격상
- » ④ 연구개발 단계평가 과정에 대한 성실한 연구에 대한 증빙

66/69



연구노트 포털 운영(e-note)

06 · 연구노트 포털(www.e-note.or.kr)

6. 연구노트 포털 운영

▶ 연구노트 포털 운영

The screenshot shows the homepage of the e-note portal (www.e-note.or.kr). At the top, there i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HOME, 로그인, MY PAGE, Contact Us, and 전체메뉴. Below this is a secondary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연구노트포털, 연구노트안내, 연구노트교육, 전자연구노트, 서면연구노트, and 소통·지원. The main content area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INFORMATION (연구노트란?, 연구노트 종류, 서면안내, 연구노트 템플릿), QUICK MENU (원장교육, 온라인교육, 시정인증안내, 시정인증신청), BOARD (공지사항, 자료실, FAQ, Q&A), and NOTICE (권설정 지원, 서면연구노트 지원, 찾아오시는길, 문의처). At the bottom, there is a '공지사항' section with a list of recent notices and a '연구노트소식' section with a featured article titled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작성 매뉴얼'.



THANK YOU

연구노트 포털

<http://www.e-note.or.kr/>
enote@kista.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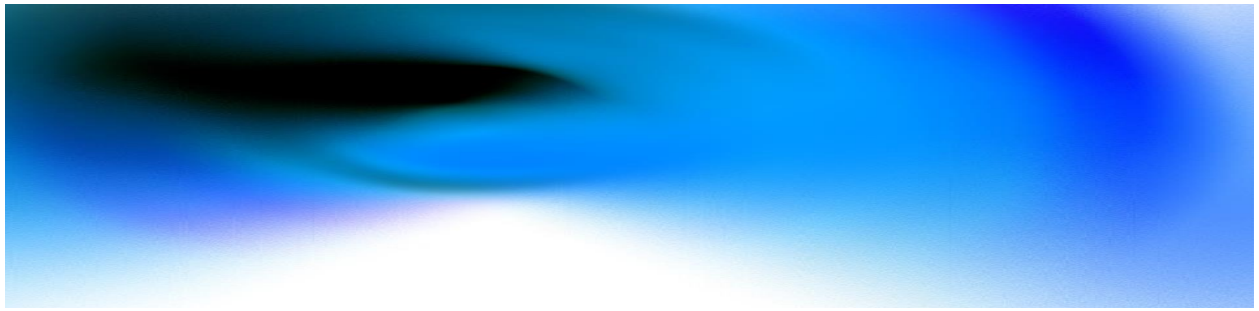


kista
한국특허전략개발원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04

성과창출 및 지식재산권



미래의 경쟁력 지식재산권

특허법인 남촌 이현영

목 차

1. 주변환경

2. 산업재산권의 이해

3. 특허란?

4. 디자인의 이해

5. 상표의 이해

주변환경

-출처: 2024. 2. 29 세계일보-

“2023년 중국 내 발명특허 500만건 육박”

중국 당국이 지난해 국내에 출원한 발명특허가 약 500만건에 달해 세계 최초로 발명특허 출원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고 29일 밝혔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2023년 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 보고’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말 기준 유효한 발명특허 건수는 **499만1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했다.

성라이윈(盛來運) 통계국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중국의 발명특허 건수가 꾸준히 증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며 이 중 고부가가치 발명특허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주변환경

-출처:한겨레(2024.03.01)

‘멈칫’ 한국 과학기술, 중국에 첫 역전당해…주요 5개국 중 꼴찌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5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한국을 비롯한 주요 5개국의 11대 분야 136개 핵심 기술을 비교 평가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 결과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평가에서,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을 100%로 봤을 때 유럽연합(EU) 94.7%, 일본 84.6%, 중국 82.6%, 한국 81.5%

특히 50개의 국가전략기술만을 대상으로 한 세부 평가에선 중국과의 기술 수준 차이가 더 커졌다

주변 환경

우리나라 특허출원 : 22년도에 약 23만7천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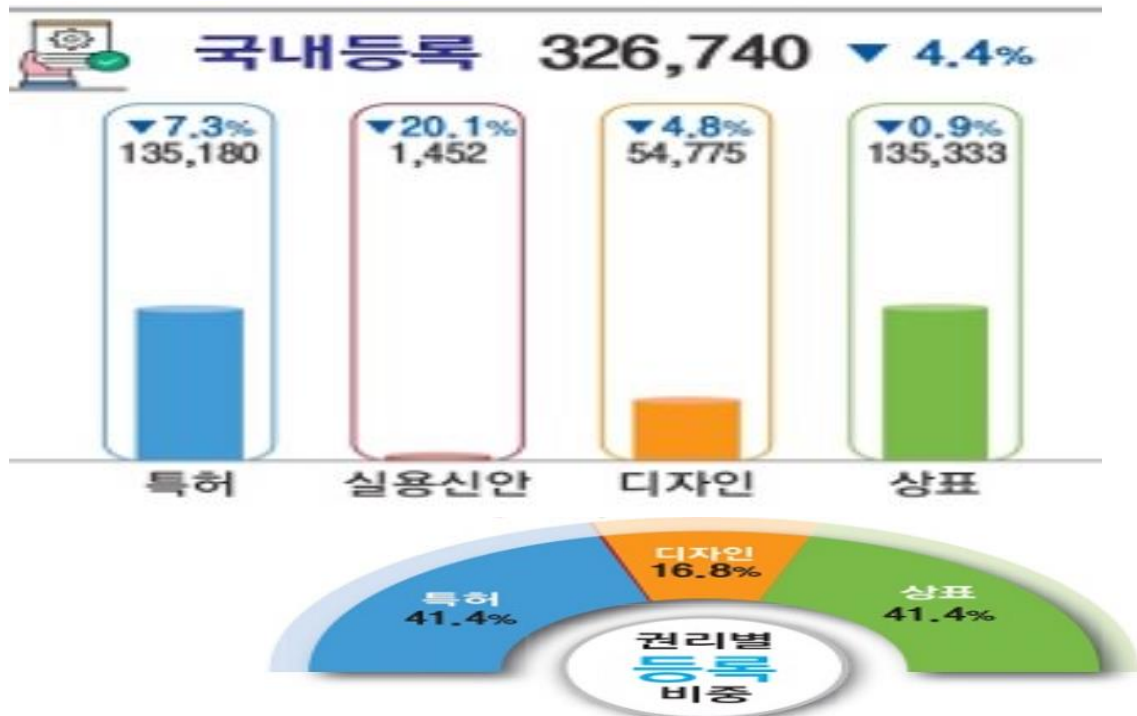
-출처:특허청



주변 환경

우리나라 특허등록 : 22년도에 약 13만5천건

-출처:특허청



1. 주변환경

연도별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

-출처:특허청



지식재산권 출원 (전년대비 6.1% 감소)

(단위 : 건)



1. 주변환경

2022년 세계 국제 특허 출원(PCT) TOP10

-출처:특허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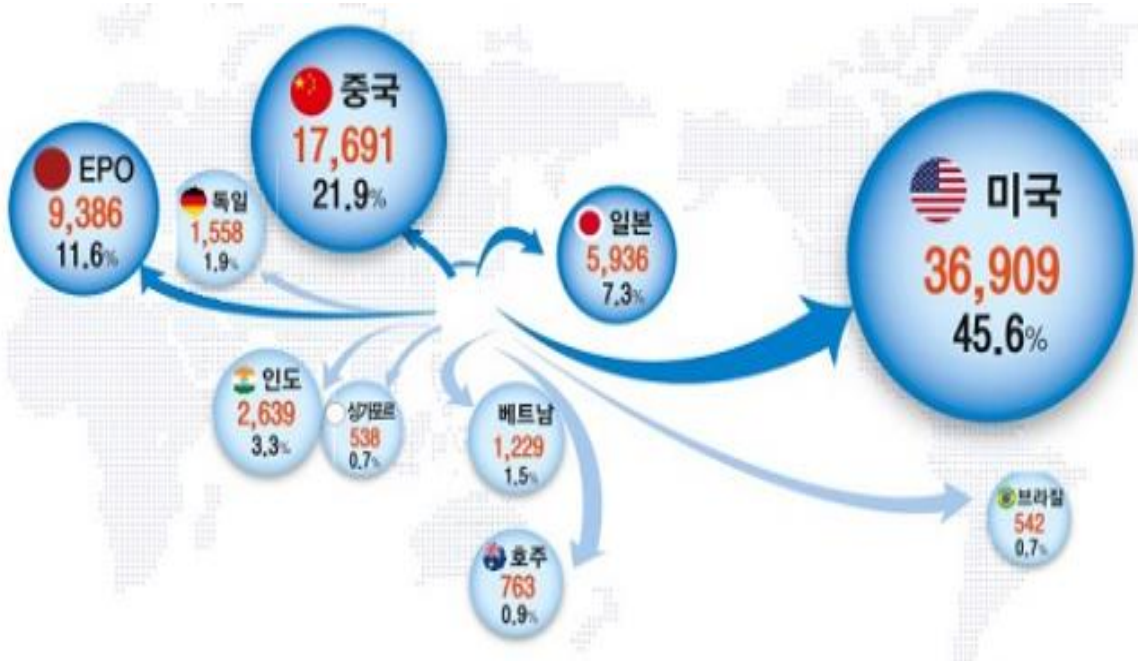


※ 출처 : WIPO IP Statistics Data Center, June 2023. (참청차)

1. 주변환경

2021년 한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

-출처:특허청



1. 주변환경

특허 다출원 TOP10

-출처:특허청

특 실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1	-	삼성전자	11,417
2	-	엘지전자	4,722
3	▲ 1	엘지에너지솔루션	3,386
4	▲ 1	삼성디스플레이	3,145
5	▼ 2	현대자동차	2,984
6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144
7	-	엘지화학	1,623
8	▲ 1	엘지디스플레이	1,513
9	▼ 1	현대모비스	1,322
10	-	한국전력공사	1,093

1. 주변환경

디자인 다출원 TOP10

-출처:특허청

디자인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1	▲ 1	엘지전자	718
2	▲ 3	삼성전자	443
3	-	씨제이	433
4	▲ 5	애플	304
5	▼ 1	현대자동차	223
6	▲ 30	나이키 이노베이트	196
7	▼ 1	엘엑스하우시스	177
8	▲ 6	현대모비스	140
9	▲ 104	영원아웃도어	137
10	▲ 45	세인환경디자인	124

1. 주변환경

상표 다출원 TOP10

-출처:특허청

상 표			
순위		출원인	출원건수
1	▲ 1	엘지생활건강	864
2	▲ 9	무신사	429
3	▲ 3	씨제이	374
4	▲ 1	아모레퍼시픽	372
5	▲ 112	비바리퍼블리카	363
6	▲ 38	에스케이텔레콤	356
7	▲ 7	바디프렌드	316
8	▲ 116	현대자동차	298
9	▲ 9,404	경상북도상주시	254
10	▼ 6	롯데쇼핑	245

1. 주변환경 시도별, 기술분야별 특허 출원 건수

-출처:특허청

	전기공학	기구	화학	기계	기타
서울특별시	24,897	7,676	8,189	7,203	4,358
부산광역시	1,388	941	1,091	1,444	977
대구광역시	1,017	819	790	1,246	615
인천광역시	1,739	823	1,353	1,716	975
광주광역시	772	619	609	753	465
대전광역시	4,262	1,928	2,037	1,628	947
울산광역시	582	337	329	700	182
경기도	25,988	7,165	7,812	9,163	6,180
강원도	438	588	860	431	357
충청북도	917	406	1,302	735	469
충청남도	1,992	938	1,675	1,830	588
전라북도	703	488	1,305	855	408
전라남도	1,181	487	773	854	513
경상북도	1,277	909	1,727	1,671	598
경상남도	1,239	798	1,277	2,337	780
제주특별자치도	321	109	250	151	104
세종특별자치시	226	140	287	135	91

1. 주변환경

특허를 가진 자가 세상을 지배한다. !!!



이동통신 분야에서만
4만 개가 넘는 특허를
가진 '특허 공룡'



▲ 1995년 6월 당시 이우성 국무총리가 세계 최초 CDMA 방식 이동전화 서비스 시범통화를 하고 있다.



1조 5천억/15yrs

주변환경

삼성이 휴대폰을 팔면 MS가 웃는다!!

미국 맨해튼 연방법원의 소송 문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MS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판매에 따른 로열티 명목으로 **10억4164만2161달러25센트**를 지불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MS는 특허 로열티 문제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MS에 지불해야 하는 로열티는 모두 지급이 끝났지만 이를 늦게 지급하는 바람에 **이자**가 붙어서로 분쟁중이다.

실제로 법원 문서에 보면 삼성전자의 로열티 지급 일자는 2013년 10월 11일이었으나 삼성전자는 2013년 11월 29일에 모든 로열티를 완납했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이자는 약 **700만 달러**다.

최진홍 기자 2014.10.06
<저작권자 © 이코노믹리뷰 >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만드는 대가 : 10억달러⁵



주변환경

"이기면 수천억 번다"

...LG 이어 삼성 공격한 美 '특허괴물'

12일 미국 법률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이머전트모바일**은 지난 8일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한경닷컴(김남영 기자: 입력 2022.04.12 17:37 수정 2022.04.13 01:55)

1주일에 한 번꼴로 '공격'

업계에 따르면 특허 소송은 최근 5년간 300여 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을 향한 NPE의 특허 소송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거의 1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해 기업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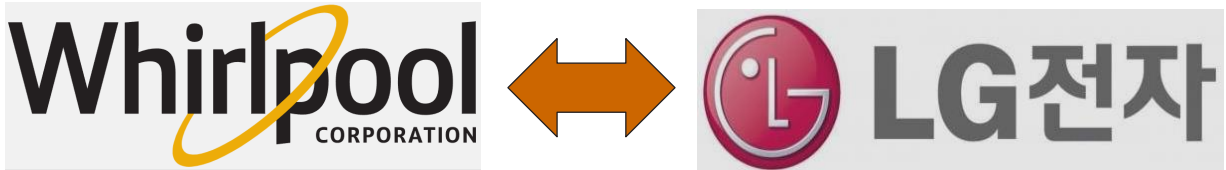
삼성, 일주일 한번 꼴 특허소송 시달린다 ...절반은 울며 겨자먹기 합의 -매일경제-

삼성 승소는 438건 중 3건 뿐



추격자에서 챔피언으로...

•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사(1911년 기업)



- **2008년**
: 월풀은 LG전자를 상대로 5건의 냉장고 관련 특허소송 제기.
- **2020년**
: LG전자, 유럽가전사와 냉장고 제빙 특허 사용계약 체결
- **닛케이**
"LG전자, 고급 브랜드 전략 만개...삼성·월풀 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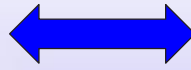
도쿄=정영효 특파원 2020.09.12 [출처] 닛케이 "LG전자...삼성·월풀 압도" | 작성자 즐재

1. 제품박스

분쟁 사례

칭구야 클나때이.
빨리 좀 와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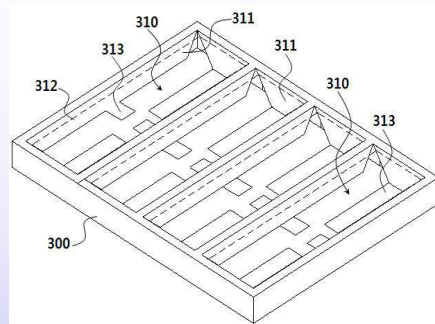
나 “졸리”는데,
넌 보면 안되겠나?



머라카노~
우리공장 문닫아야 될지 모린다
퍼뜩온나

1. 제품박스

분쟁 사례



경 고 장

*월 *일까지 전 제품을 폐기하고,
*****원을 배상하지 아니하면 고소하겠다...

분쟁 사례

1. 제품박스

반박 (내용증명)

제목 : 특허침해 경고에 대한 답변

.....

명확한 침해입증도 없이 본 발신인에게
경고장을 남발함으로써 권리를 남용하고
있습니다.

.....



분쟁 사례

2. 식당

계약서 (노예계약)

특허 + 상표

특허와 상표 때문에 너무 힘들다

* 특허 : ****의 제조방법

* 상표 : ****

2. 산업재산권의 이해



특허와 구별되는 권리

특허 → 발명

엔진 제어 시스템
ABS 브레이크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제조공정

실용신안 → 고안

백미러
컵 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조정장치

디자인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상표

자동차 명칭
그랜저, 소나타, 레간자
제작사 명칭
현대, 대우, 기아

산업재산권의 종류

구분	정의	존속기간
특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물건 & 방법)	20년 (출원일)
실용신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건)	10년 (출원일)
디자인	물품(예외인정)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20년 (출원일)
상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	10년 (등록일) 갱신가능



태어난 지 20년??
(미성년자?)



보호 끝!!!
(성년)

25

3. 특허란?

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특허 소식

유노윤호 특허청 깜짝 방문...

"내가 만든 발명품 특허신청"



-동방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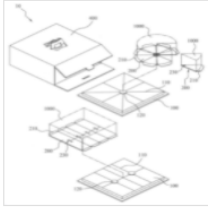
특허 소식

정윤호

Total 4 Articles (1 / 1 Pages)

[1] 케익 포장구(Cake Packing Device)

유사특허 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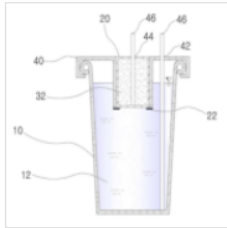


IPC : B65D 85/36 B65D 5/50 B65D 5/42 B65D 77/24 A47G 19/02
 출원번호(일자) : 1020200114740 (2020.09.08) 출원인 : 정윤호 >더보기
 최종권리자 : 피인용 횟수 :

요약 케익 포장구는 케익이 안착되는 공간을 제공하는 받침대 및 상기 받침대의 상부에 복수 구비되는 종이 접시 구조를 포함하는 케익 포장구(10)를 제공한다. 케익 포장구(10)는 케익 포장구(10)의 상부에 복수 구비되는 종이 접시 구조를 포함하는 케익 포장구(10)를 제공한다.

[3]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Cup lid for mounting of the capsu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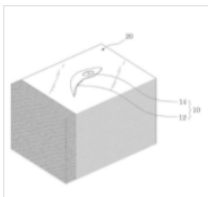
유사특허 공보



IPC : B65D 51/28 B65D 77/28 B65D 85/72
 출원번호(일자) : 1020140063378 (2014.05.27) 출원인 : 노신현 >더보기
 최종권리자 : 노신현, 정윤호 피인용 횟수 : 1

요약 본 발명은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세하게는 개방된 상측으로 제 1음료가 수용되며, 내측으로는 걸림턱이 형성되어 상, 하로 이탈되거나 유동되지 않고 긴밀하게 걸림 결합되는 캡슐 수용부에 제 2음료가 수용되는 캡슐을 삽입하여 하나의 컵에 서로 다른 종류의 음료를 음용할 수 있는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에 관한 것이다. 상기한 바와 같은 본 발명에 따른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은 제 2 음료를 수용하는 캡슐을 용기 상단에 배치하여 간단하게 캡슐을 교체할 수 있고, 음료를 음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빨대를 간단한 방법으로 삽입할 수 있어 두 가지의 음료를 쉽게 제공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2] 택배박스에 부착되는 점착 용종 커딩기(Adhesive paper attach the delivery box enclosed in the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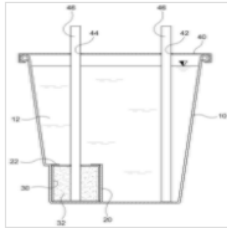


IPC : B65D 85/36 B65D 5/50 B65D 5/42 B65D 77/24 A47G 19/02
 출원번호(일자) : 1020200114740 (2020.09.08) 출원인 : 정윤호 >더보기
 최종권리자 : 피인용 횟수 :

요약 이 요입된 나머지 영 포함하여

[4] 이중 컵(DOUBLE CUP)

유사특허 공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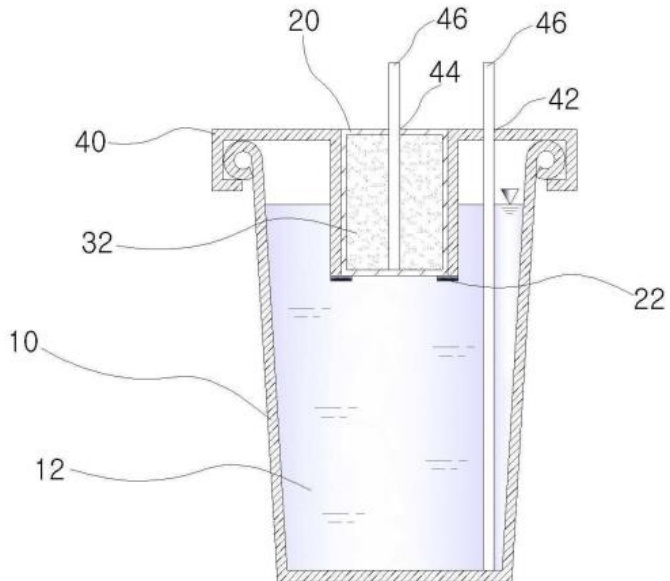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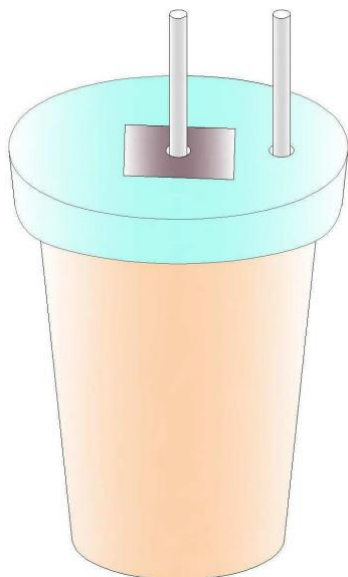
IPC : A47G 19/22 B65D 25/04
 출원번호(일자) : 1020140003709 (2014.01.13) 출원인 : 노신현 >더보기
 최종권리자 : 노신현, 정윤호 피인용 횟수 :

요약 본 발명은 상측이 개방되고 제 1음료가 저장되며 하면에 수용부가 형성되는 컵 바디와, 상기 수용부에 장착되고 제 2음료가 저장되는 캡슐을 포함하는 이중 컵을 제공한다. 이와 같은 이중 컵은 컵 바디에 저장되는 제 1음료와 캡슐에 저장되는 제 2음료를 한번에 마실 수 있어 사용이 편리하고, 컵의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음료를 먹는 재미를 줄 수 있다.

특허 소식

정윤호

캡슐의 장착이 가능한 컵 뚜껑



특허 요건

정윤희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등록디자인공보(S)

(45) 공고일자 2020년03월20일
(11) 등록번호 30-1051471
(24) 등록일자 2020년03월16일

(52) 분류 C4-03, J6-11
(51) 국제분류 02-03 일부심사등록
(21) 출원번호 30-2020-0009539
(22) 출원일자 2020년03월03일

(73) 디자인권자

정윤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신현

광주광역시 동구 지

(72) 창작자

정윤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신현

광주광역시 동구 지



특허 소식

VIP Q

머니투데이

☰ 뉴스 증권 정치 법률 유니콘팩토리 칼럼 자동차 연예 이슈 MT리포트 **속보** 일론 머스크

이시원·유노윤호 '마스크'·'침대'...특허왕 연예인들

머니투데이 | 이영민 기자

VIEW 14,289 | 2022.02.26 0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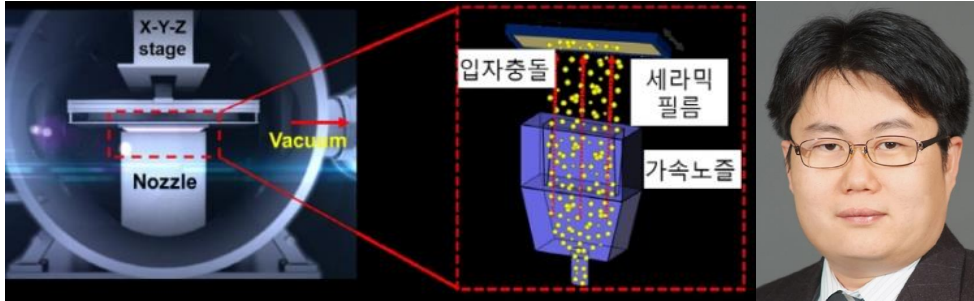
🔍 🔖 📄 🔍 의견 남기기



특허 만드는 방법

누가 특허 만드나?

- 재료연구, 레이저 이용한 세라믹 필름 열처리 기술 개발 - 출처: 매일경제(2017.03.15)



- 올해의 학생 발명왕...맛있는 차 끓이는 자동 '차 거름망' - 출처: 뉴시스(2021.09.14)



제42회 전국학생과학발명대회 대통령상 수상자 송민준 학생이 발명 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부리명 화면 일부) 2021.09.14 /뉴시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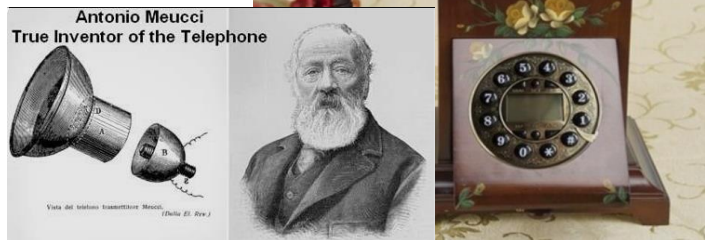
특정 온도에서 자동으로 거름망을 제거해 차 맛을 좋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전국 학생 발명품 대회에서 우승작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상 수상작은 송민준 학생의 '차 끓일 때 적정 온도에서 자동 분리되는 티포트 거름망 KIT(키트)' 작품이 선정됐다.

특허 내는 목적

나만 쓸 거야..

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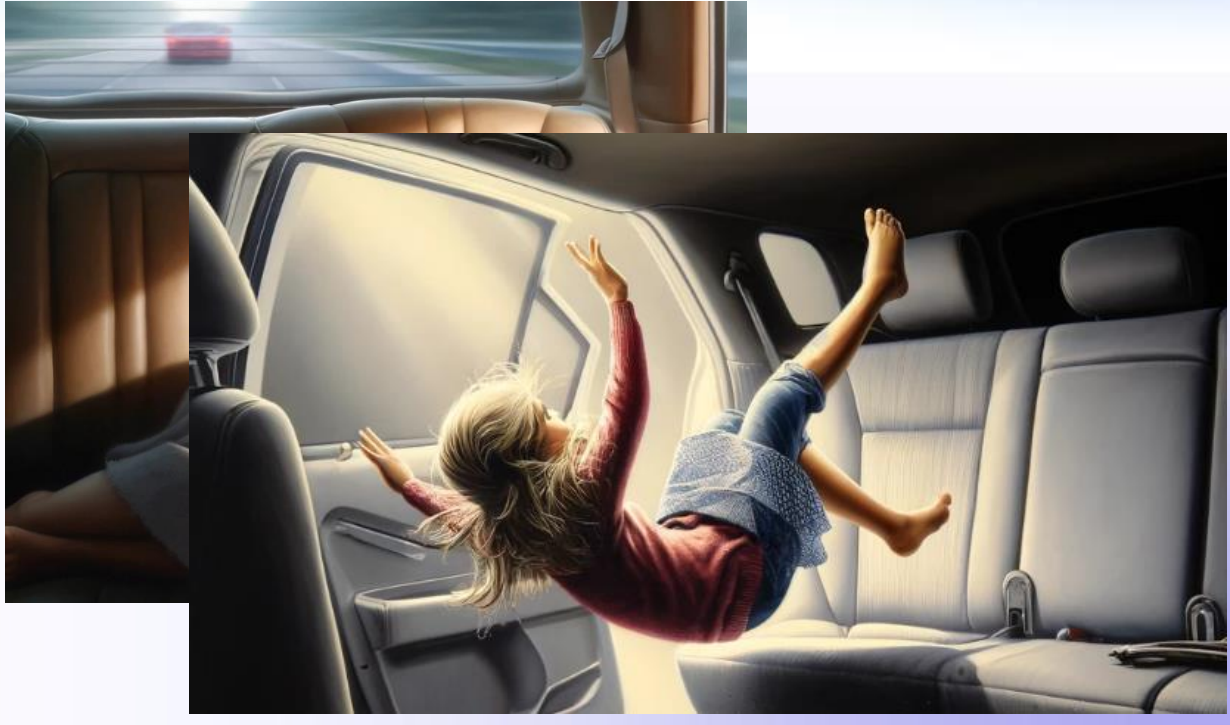
특허증이 필요해..



나도 특허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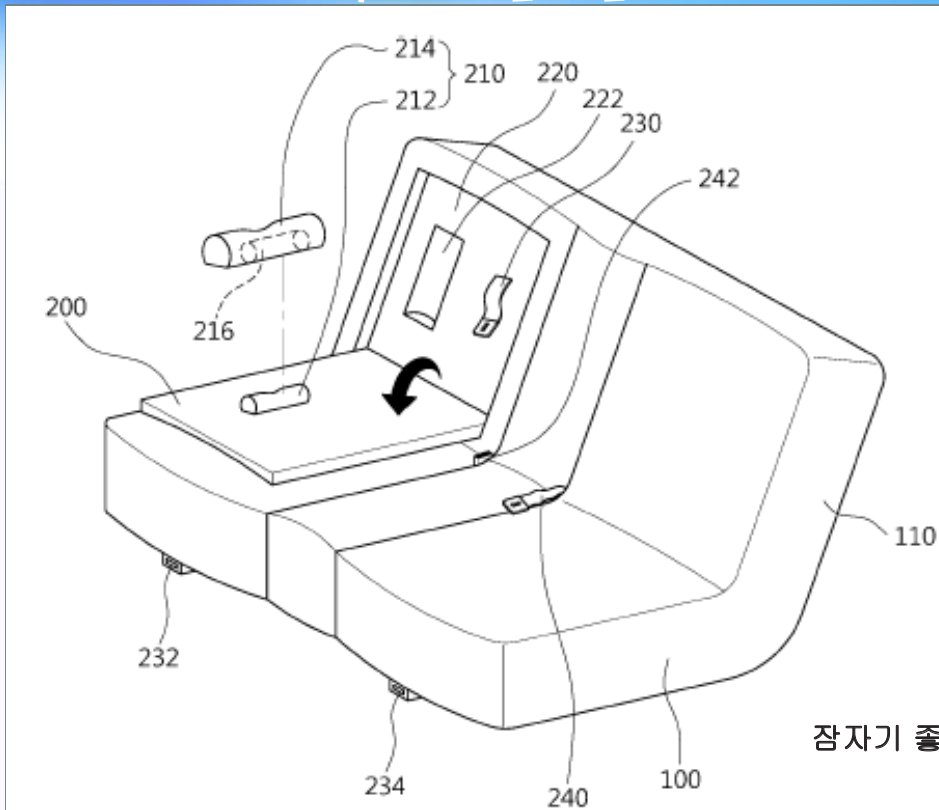
3. 특허랑?

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3. 특허랑?

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잠자기 좋은 뒷자석구조

3. 특허란?

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실용신안권자란	
순위번호	사항
4번	(등록권리자) 이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2013년 05월 30일 등록
2번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등록 의무자 : 이정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등록 권리자 : (주)에이... 부산광역시... 등록 원 인 : 양도 등록의 목적 : 권리의 전부이전등록 2018년 03월 02일 등록

특허 이전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51) 국제특허분류(Int. Cl.)	(24) 등록일자
A47B 96/02 (2006.01) A47B 95/00 (2006.01)	(73) 특허권자
E05C 1/06 (2006.01) G01G 1/00 (2006.01)	조빛나
(52) CPC특허분류	(72) 발명자
A47B 96/022 (2013.01)	조빛나
A47B 95/00 (2013.01)	서울특별시
(21) 출원번호	10-2017-0092519
(22) 출원일자	2017년07월20일
심사청구일자	2017년07월20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200365489 Y1	
KR1020020015483 A	
KR1020150063992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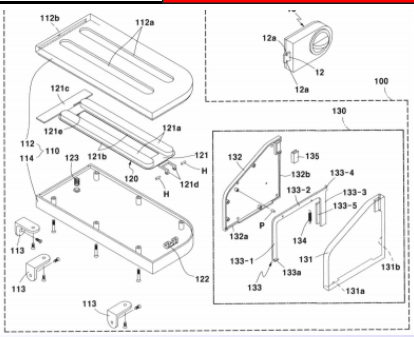
(45) 공고일자 2018년08월03일
 (11) 등록번호 10-1885482
 (24) 등록일자 2018년07월30일

(73) 특허권자
조빛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104길 42-1 (독산동)

전체 청구항 수 : 총 6 항
 심사관 : 류호진
 (54) 발명의 명칭 **공중화장실용 코너선반장치**

(57) 요약
 본 발명은 공중화장실용 코너선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상면에 장공이 형성되고, 일측면에 작동홈이 형성된 상부케이스 및 상부케이스와 일치되어 상호 조합되는 하부케이스로 이루어지며, 하부케이스의 저부에 고정쇠의 부착으로 화장실 부스의 내부 측벽에 원으로 부착되는 코너선반과; 상기 상부케이스와 하부케이스 내에 설치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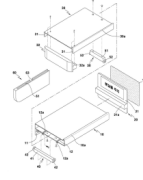
(54) 발명의 명칭 **공중화장실용 코너선반장치**



(19) 대한민국특허청(KR)	(45) 공고일자	2020년04월07일
(12) 등록특허공보(B1)	(11) 등록번호	10-2078927
(51) 국제특허분류(Int. Cl.)	(24) 등록일자	2020년02월12일
A47B 96/02 (2006.01) B05D 41/00 (2006.01)	(73) 특허권자	조빛나
E05C 1/04 (2006.01)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09번길 23, 303호(신원동, 대일빌딩)	
(52) CPC특허분류	(72) 발명자	조빛나
A47B 96/022 (2013.01)	조빛나	
B05D 41/00 (2013.01)	경기도 시흥시 수인로3409번길 23, 303호(신원동, 대일빌딩)	
(21) 출원번호	10-2019-0119730	
(22) 출원일자	2019년10월06일	
심사청구일자	2019년10월06일	
(56) 선행기술조사문헌		
KR100740751 B1		
(70) 발명인		
(71) 발명인		
(72) 발명인		
(73) 특허권자		
(74) 특허대리인		
(75) 출원인		
(76) 출원인		
(77) 출원인		
(78) 출원인		
(79) 출원인		
(80) 출원인		
(81) 출원인		
(82) 출원인		
(83) 출원인		
(84) 출원인		
(85) 출원인		
(86) 출원인		
(87) 출원인		
(88) 출원인		
(89) 출원인		
(90) 출원인		
(91) 출원인		
(92) 출원인		
(93) 출원인		
(94) 출원인		
(95) 출원인		
(96) 출원인		
(97) 출원인		
(98) 출원인		
(99) 출원인		
(100) 출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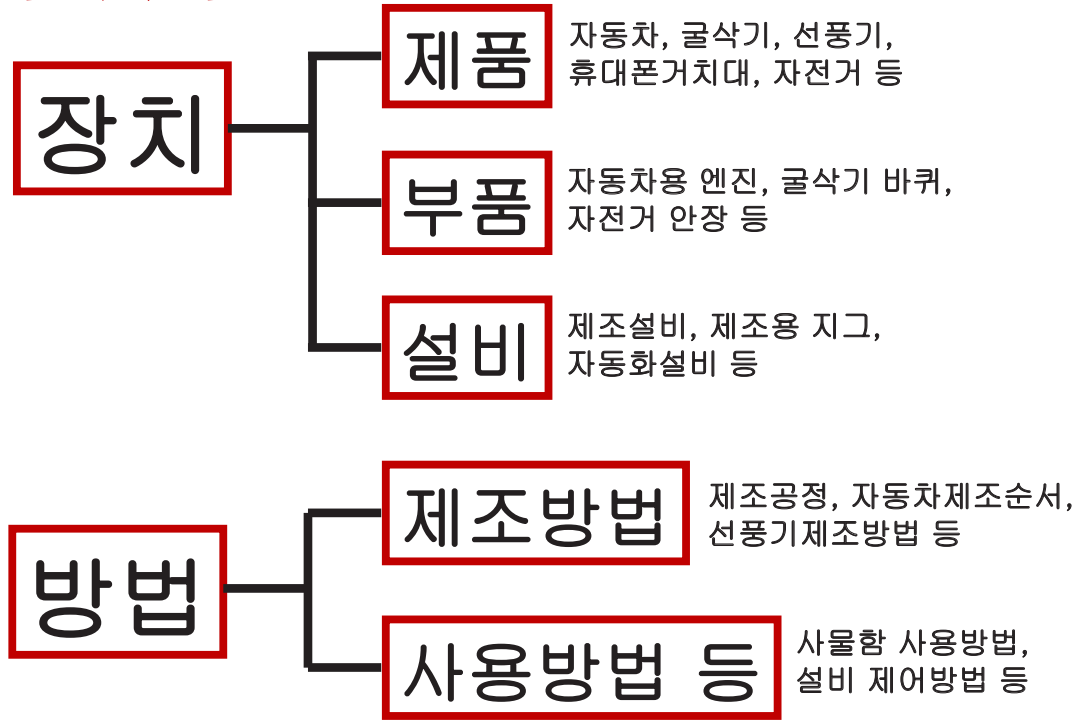
(57) 요약
 본 발명은 공중화장실용 코너선반장치에 관한 것으로서, 화장실 부스 내부에 중앙의 코너선반 및 코너선반으로부터 돌출되는 보조선반을 갖추어 보조선반의 돌출 부분에 따라 돌출 여단에 도어에 마련된 고정대에 보조선반의 일측부가 걸리고, 일측부는 외부표시기의 회전축상의 레버를 작동시켜 화장실 사용 여부를 외부에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코너선반의 확장/축소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역할을 하며, 코너선반과 보조선반에 올려진 소지품을 정리 후 보조선반을 이용하여 고정대로부터 정리를 해제하여 화장실부스 외부로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소지품 분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한다.

대표도 - 도1



특허 종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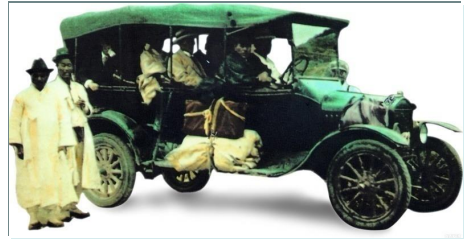
“발명의 유형”



특허요건 (특허법 제29조)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2. 발명의 **신규성** (새것인가?)
 → **국내외 불문**



3. 발명의 **진보성** (얼마나 획기적인가?)



OR



선출원

먼저 출원하는 자가 장땡!!!

전화기 발명? 벨?



정리

특허 주요 등록 요건

- 1. 산업상 이용 가능성
- 2. 발명의 신규성 (새것인가?)
→ 국내외 불문
- 3. 발명의 진보성 (얼마나 획기적인가?)
- 4. 선출원주의 (남보다 하루라도 먼저)

특허침해문제

나의 특허와 다른 사람의 특허

“내가 특허 받은 기술은 사업화 가능하다?”



특허침해문제

특허 침해의 판단

특허침해이론의 고찰

(1) 특허 보호범위 (특허법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 특허청구범위 해석방법

㉠ 구성요소완비의 원칙(All Elements Rule)

→ 모든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침해이고, 구성요건의 하나라도 결여되면 비침해
 [청구범위: A+B+C인 때] → A+B 는 비침해 (생략발명) → A+B+C+D 는 침해(이용발명)

㉡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

: 실질적으로 동일한 방식에 의해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갖고,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하는 균등물은 대응되는 구성요소와 동일시하여 권리범위의 확대를 허용하는 논리이다. (A+B+C')

㉢ 금반언(File Wrapper Estopp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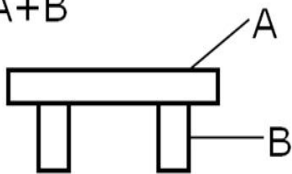
: 출원절차 중에 있어서의 주장과 모순하는 주장을 금하는 원칙.
 (출원 중에 있어서는 발명을 좁게 주장하여 특허를 취득한 자가 후의 침해소송에 있어서 넓게 주장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

㉣ 기타 : 간접침해, 생산방법의 추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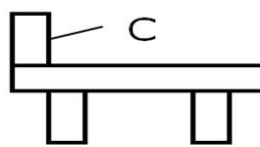
중요 특허를 만드는 방법

“청구범위 기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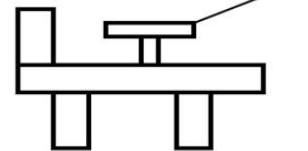
1. A+B



2. A+B+C



3. A+B+C+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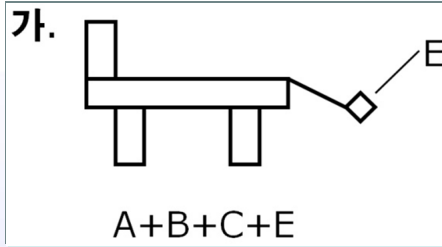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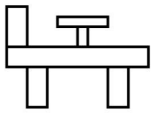


과제 → 사업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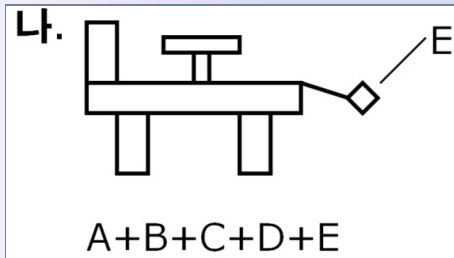


(청구범위)

1. A+B+C+D



- 특허 가능?
- 회피 가능?
- 사업화 는?



- 특허 가능?
- 회피 가능?
- 사업화 는?

4.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이란?

: 모양, 형상에 대해 창작한 자에게 20년 동안 독점할 권리를 주는 것.



디자인이란...



1915년

용기 디자인 공모전



얼 딘(Earl D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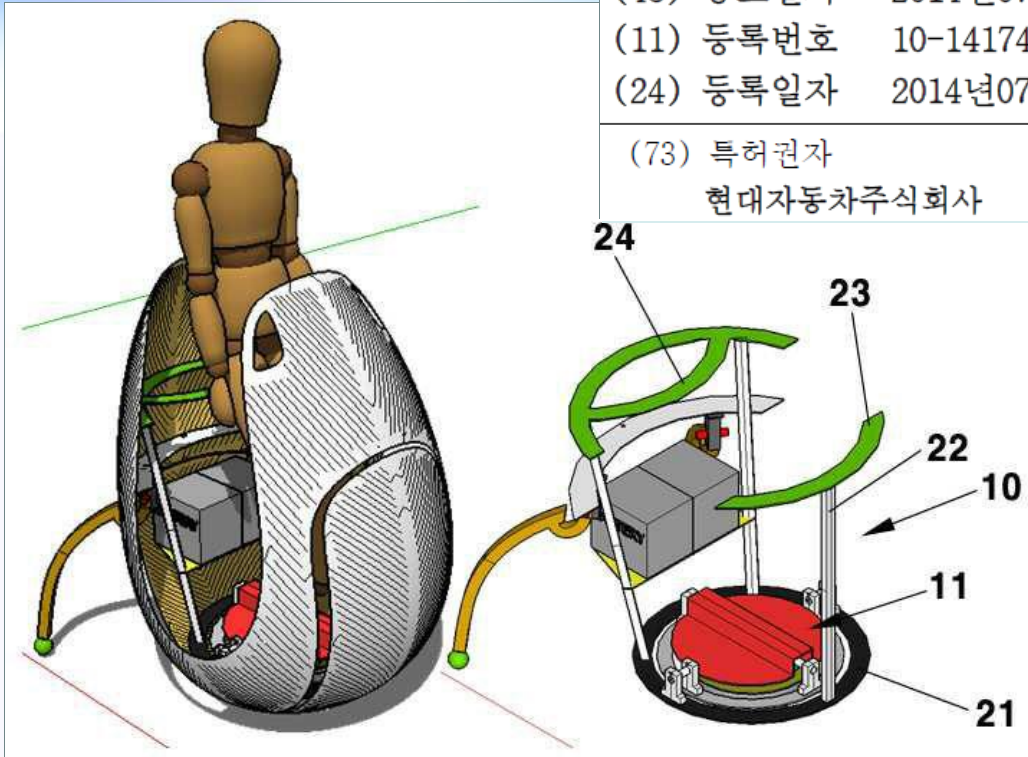
49

???



50

디자인의 이해



51

디자인의 이해

디자인도 등록이 필요해???

**특허를 가지고 있는데,
또 디자인등록은 왜??**

디자인권을 쓸모 없는 권리로 여기는 스타트업이 의외로 많다. 등록된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만 보호되기 때문에 ‘모양만 조금 바꾸면 보호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일 디자인뿐만 아니라 유사 디자인에 대한 배타적 권리도 부여된다는 점에서 권리범위가 좁다고만은 볼 수 없다.

아울러 특허나 실용신안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형상이나 구조도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디자인권을 등록해 제품의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디자인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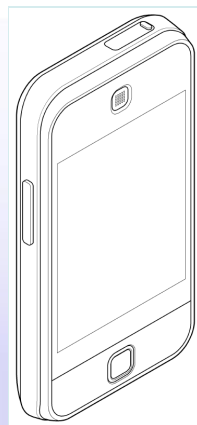


디자인의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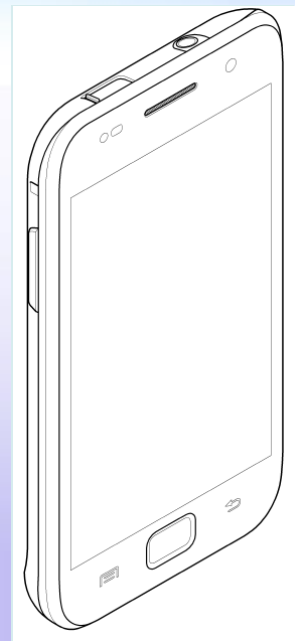
휴대폰 / 커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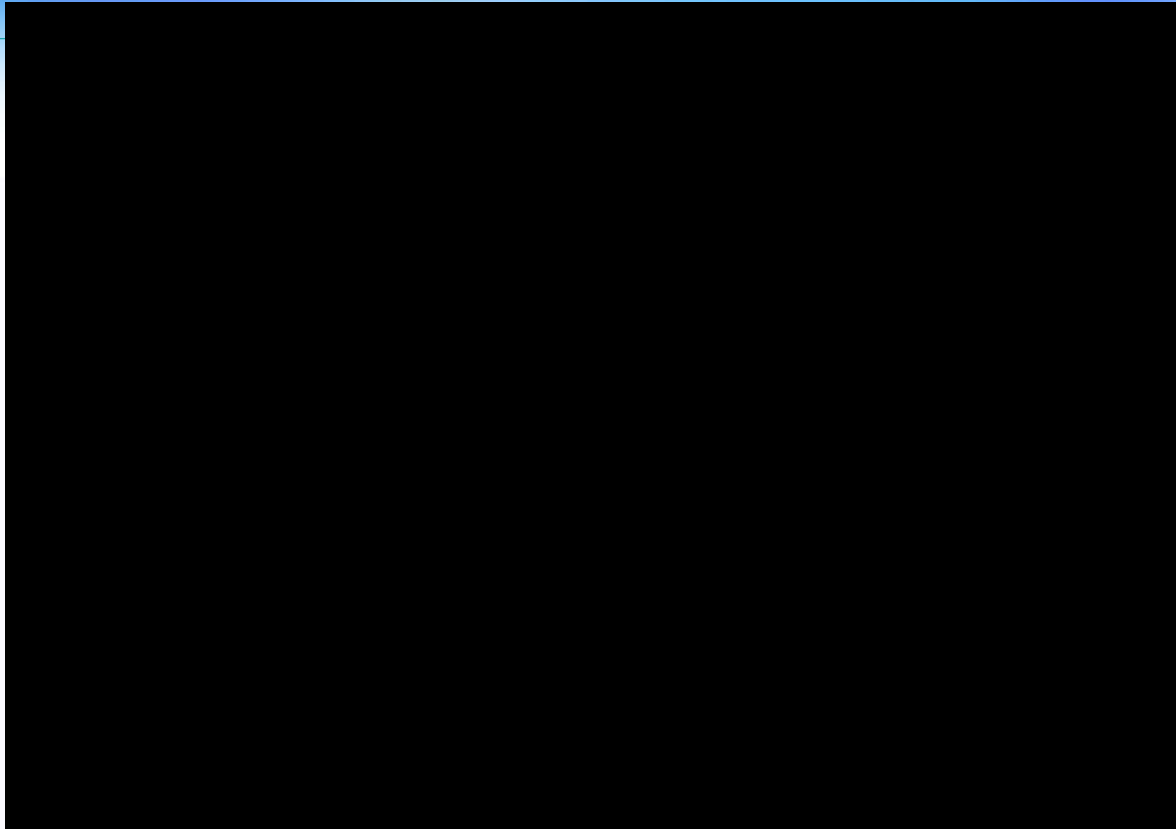
김성덕



삼성전자



삼성전자 드론디자인



자동차 디자인



현대자동차



디자인등록(2016년)



볼보 S90(2018년형)

58

디자인의 유사판단

[선고2012후3794판결]

- 전체적**으로 대비관찰 (각 요소를 분리하여 대비X)
- 사람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요부로 하여 파악해야
-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디자인의 기본적 또는 기능적 형태는 중요도 낮게..

[선고2013다 202939판결]

- 공지부분 포함시 : 이 부분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선고2010도 12633판결]

- 기존에 없던 **참신한 디자인은 유사범위를 넓게**..
- 옛날부터 사용하던 단순형상 또는 다양한 고안이 있는 것, 크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것 등은 유사범위를 좁게 보아야..

[선고2002후 1218판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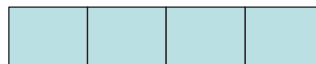
- 물품 거래시의 외관 뿐만 아니라, 사용시의 외관에 의해 심미감도 함께 고려하여야..

59

디자인의 유사판단



V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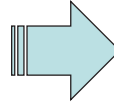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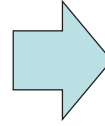


VS



60

디자인의 유사판단



61



5. 상표의 이해

상표 ?



63

상표의 이해



64

상표의 중요성



1977년 8월 현대쇼핑센터(현 현대백화점 울산 동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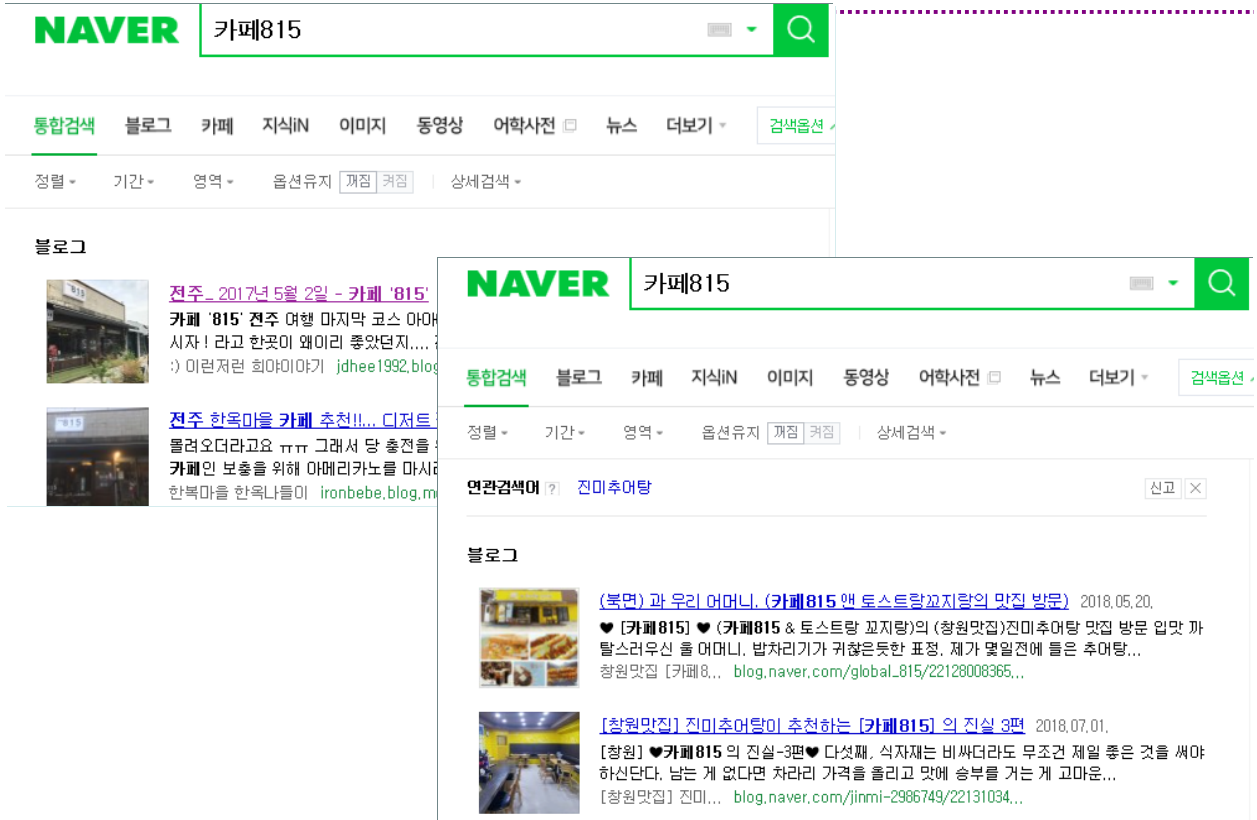


현대피앤씨

상표 분쟁



상표 분쟁



상표의 이해

상표 등록 유형

글자(문자) **GENESIS**

글자+로고



로고



상표의 이해

상표 등록 요건은?

식별력이 있어야...

좋은회사 ?

좋은우유 ?

<input type="checkbox"/> 등록 [1] 남양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명: 남양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명: 남양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명: 남양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분류: 29 출원(국제등록)번호: 4020120040768 등록번호: 4010049510000 출원공고번호: 4020130065091 도형코드:	출원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출원(국제등록)일자: 2012.06.26 등록일자: 2013.11.04 출원공고일자: 2013.07.03 대리인: 박병창
<input type="checkbox"/> 거절 [2]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명: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명: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명: 3번 더 좋은 우유	상품분류: 29 출원(국제등록)번호: 4020120040769 등록번호: 출원공고번호: 도형코드:	출원인: 남양유업 주식회사 출원(국제등록)일자: 2012.06.26 등록일자: 출원공고일자: 대리인: 박병창

69

상표의 이해

상표 등록 요건은?

한글 2자 이상, 영문 3자 이상..



2011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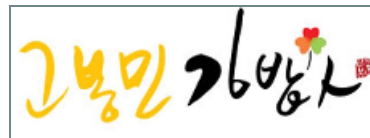


* 먼저해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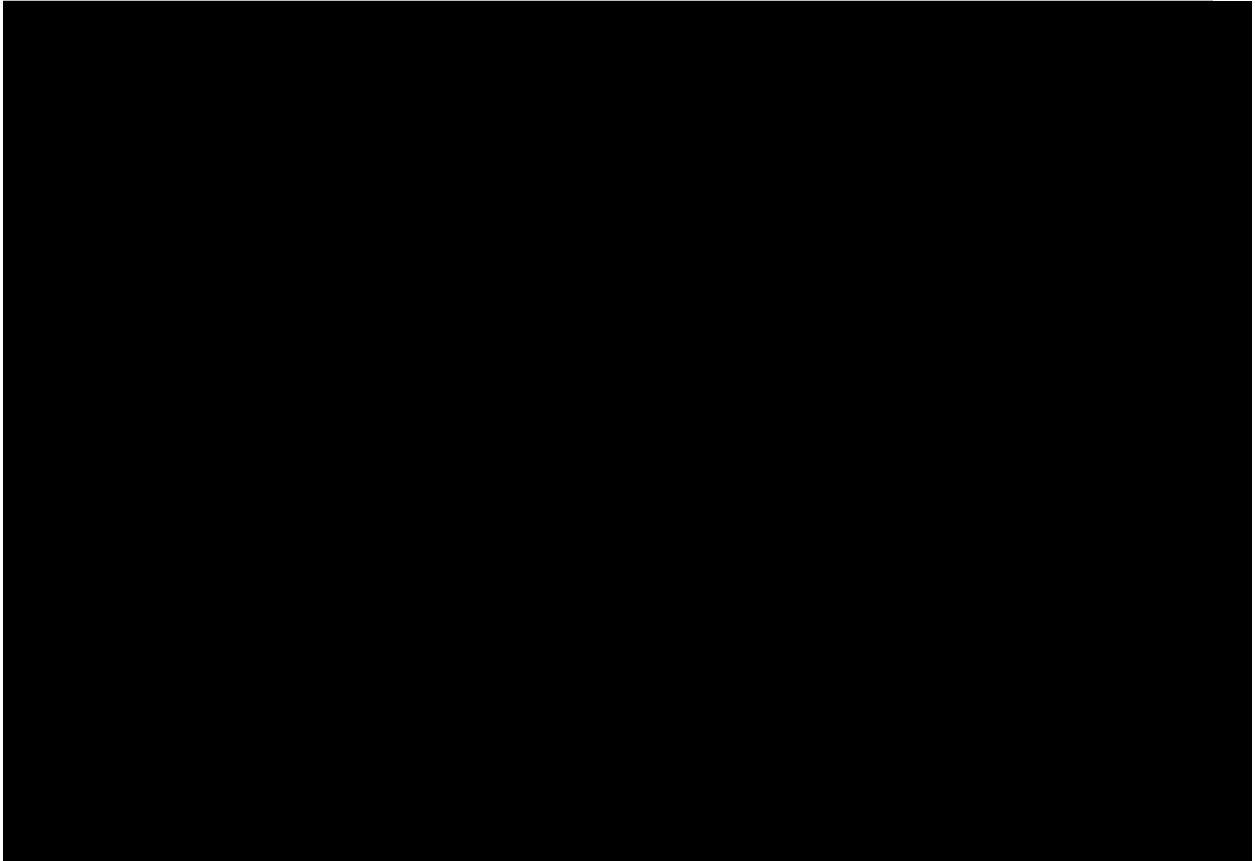
2011등록

2009 영업



70

상표등록은 출생신고



상표의 이해

* 상표 브로커 ?

〈피해규모에 따른 집중관리 상표브로커 현황〉			
연번	브로커 명	우리기업	
		피해권리	피해기업
1	金光春	330	258
2	沈阳绅士格林贸易有限公司	142	112
3	优而康国际贸易(上海)有限公司	80	18
4	北京汉拿山世纪国际商务会馆有限公司	73	14
5	李恩植	72	38
6	张永杰	49	26
7	〈K-브랜드 상표무단선점 피해특징〉		8
8	한류 드라마 PPL 브랜드명 선점	한국 대표지역 브랜드 및 유명인명 선점	14
9			16
10			

72

상표의 이해

CJ·오뚜기·bhc도 '먹잇감'으로 노린 중국 상표브로커

(출처:아시아경제, 2020.02.06)

한국 상표만 모아 등록한 뒤 '상표 장사'...해마다 급증 1100여개 독점
 외식 브랜드 중국 진출 가로 막아 '짜퉁 장사'...법정 다툼 수천만원 소요
 교촌, 선등록으로 '교촌' 제재...CJ, 빠른 이의신청으로 '짜퉁 피해' 막아



73

상표의 이해

영세업체까지...中 상표브로커에 당한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ZOBXWU>)

•패션 액세서리를 판매하는 O사 김지우(가명) 대표
 “중국 진출을 앞두고 상표를 등록하려고 보니 이미 자사 제품, 서비스명을 비슷하게 따라한 **상표권이 무더기로 등록돼 있었다**”며
 “문제된 상표를 무효로 만드는 데는 비용도 수천만원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해서 브로커에게 **수백만원을 송금**하고 상표를 되찾아왔다.
디자인 도용 건도 너무 많아 대응하는 것을 **포기**했다”고 털어놨다



74

상표 등록 요건은?

NICE분류 11판	NICE분류 10판	NICE분류 9판	NICE분류 8판	한국분류	상표	서비스
01류	공업용, 과학용, 사진용, 농업용, 원예용 및 임업용 화학제; 미가공 인조수지, 미가공 플라스틱; 비료; 소화용(消火用) 조성물; 조절제(調質劑) 및 땀납용 조제; 식품보존제; 무두질제; 공업용 접착제		08류	수공구 및 수동기구; 커틀러리; 휴대용 무기; 면도기		
02류	페인트, 니스, 래커; 녹 방지제 및 목재지; 도장용, 장식용, 인쇄용 및 미술용		09류	과학, 할해, 측량, 사진, 영화, 광학, 계량, 측정, 신호, 검사(감시), 구멍 및 교육용 기기; 전기의 전도, 전환터 소프트웨어; 소화기기, 변형, 축적, 조절 또는 통제를 위한 기기; 음향 또는 영상의 기록, 전송 또는 재생용 장치; 자기(磁氣)데이터 매체, 녹음디스크, CD, DVD 기타 디지털 기록매체; 동전작동식 기계장치; 금전등록기, 계산기, 데이터 처리장치, 컴퓨터; 컴퓨터 소프트웨어인 소프트웨어		
03류	표백제 및 기타 세탁용 제제; 세정, 광택, 비료용 화장품, 비료용 헤어로션;	34류 담배; 흡연용구; 성냥				
04류	공업용 (자동차)	35류	광고업; 사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			의안(義眼), 의치(義齒); 정형안마기; 유아수유용 기기 및 용
05류	약제, 제제, 충전제	36류 보험업; 재무업; 금융업; 부동산업	37류	건축물건설업; 수선업; 설치서비스업		기용, 급수용 및 위생용 장치
06류	일반용 일기	38류	통신업			송수단
07류	기계 장치	39류	운송업; 상품의 포장 및 보관업; 여행알선업			
		40류	재료처리업			
		41류	교육업; 훈련제공업; 연예오락업; 스포츠 및 문화활동업			
		42류	과학적, 기술적 서비스업 및 관련 연구, 디자인업; 산업분석 및 연구 서비스업;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디자인 및 개발업			폼(가구는 제외); 문방구용 또는 포장용 플라스틱제 시트, 필름
		43류	음식물품을 제공하는 서비스업; 임시숙박업			
		44류	의료업; 수의업; 인간 또는 동물을 위한 위생 및 미용업; 농업, 원예 및 임업 서비스업			
		45류	법무서비스업; 유형의 재산 및 개인을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보안서비스업; 개인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적인 또는 사회적인 서비스업			

75

Q & A



Thank you so much!

PATENT & TRADEMARK
특허법인

창원지사 (055-298-1995)

이현영(010-7677-3442, leehy@namchon.net)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05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21년 이후 협약 지역특화산업육성+(R&D) 협약 과제 기술료 안내 자료 - 혁신법 제정에 따른 기술료 -



I 기술료 납부 절차

□ 기술료 프로세스 절차

최종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 실태조사 · 최종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결과 통보 및 결과 확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 접수(공문 등) · 중기부 확정 통보 이후
↓		
사업비 정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 이의 접수(공문 등)
↓		
기술실시계약 체결(혁신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료 납부 계획에 대한 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첫 징수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 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7년

II 목적 및 관련 규정

□ 기술료의 목적과 정의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 연구개발 재투자 및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구조를 유지하고자 함

○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 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련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III 세부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구분	내용
징수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중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기술료산정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② 매출액 기여도(협약시 정한 비율) ×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정산 후 확정 비율) × 기술료율(중소기업 5%) ·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기업총매출액) · 개인) 사업소득명세서 상 수입금액(총매출액)
납부절차	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실시기업별): 과제 종료 후 정산 완료 시점에서 제출안내문 발송(해당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는 실시기업별 상한액 확인을 위해 작성) 2.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2년 뒤에 공문 및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등의 증빙서류 제출 → 기술료 납부고지서 발급(평가단) →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기술료 납부(실시기업)

제출서류	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회계기관 날인 필요 3. R&D 성과 세부사양 및 매출액 관련자료 등
징수한도 (납부상한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연구개발비) <u>실사용금액의 100분의 10</u> 을 한도로 징수 → 중소기업
납부시기	수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기술실시결과보고 제출 후 납부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 기준 다음해가 첫 매출 조사 해당 년도임 예) 최종평가 성공통보일이 2023-04-01일 경우 첫 매출 조사 해당연도(1차년) 2024년 매출액에 대한 기술료 결과보고서 제출 및 1차 정률기술료 계상 시기 예정: 2025-06-30
납부기한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납부
제재조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상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액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금액 산식기준

①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16호 서식)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기업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조정계산 항목 중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 다만, 기업매출 중 상당부분이 상품매출, 임대 등 제품 외 매출인 경우 국세청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등의 증빙을 통하여 제품 매출 반영 가능

② 매출액 기여도(협약시 약정한 매출 기여비율)

- 기업이 과제 신청 시 제시하고, 협약 체결한 연차별 매출액 기여도를 기준으로 적용

가. 과제 신청시 제출(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년 (개발종료 해당년)	()년 (개발종료 후 1년)	()년 (개발종료 후 2년)	()년 (개발종료 후 3년)	()년 (개발종료 후 4년)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기술기여도 (C=(B/A)*100)						

나. 협약 체결시 (협약서 제16조 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매출액 기여도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실 사용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연구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 비중을 적용함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frac{\text{정부지원연구개발비*}}{\text{총 연구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 투입금액) : 총 지급한 정부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 기술료 산정방법 예시

○ 2022년 12월 종료 과제 실시기업 1년차 기술료 예시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 2023-05-30
- 금액(정부출연금 200,000천원, 민간현금+현물(80,000천원), 정산금(500천원))
- 기술료 총액(한도금액): 19,500천원
- 1년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예정시기: 2025-06-30
- 1년차 기술료 산정 계산시
 - ① 2024년 기업 총 매출액(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 ② 사업계획서 상 연구개발결과물 점유비율(매출액 기여도 1년차) ×
 - ③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자체연구개발비) 기여도 ×
 - ④ 기술료율 5%(중소기업 기준)

□ 2022년 12월 종료 과제 실시기업 1년차 기술료 예시

- 최종평가 성과 통보일 : 2023-05-30
- 1년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예정시기 : 2025-06-30
- 1년차 기술료 산정 계산식

2024년 기업 총 매출액(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4,460,970,473원**

[별지 제2호의1서식] 법인세법 시행규칙 <중전의 서식 2호의2에서 이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사업 연도	2024.01.01. ~ 2024.12.31.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주)00000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정과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정		⑤ 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고
①항목	②과목	④가산	⑤차감		
매출	제품매출	1,511,960,362			1,511,960,362
매출	수출매출	37,050,000			37,050,000
매출	000 매출	2,911,960,111			2,911,960,111
계		4,460,970,473			4,460,970,473

□ 2022년 12월 종료 과제 실시기업 1년차 기술료 예시

- 최종평가 성과 통보일 : 2023-05-30
- 1년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예정시기 : 2025-06-30
- 1년차 기술료 산정 계산식

2024년 기업 총 매출액(세무조정상 수입금액)

x 사업계획서 상 연구개발결과물 점유비율(매출액기여도) (1년차) : **0.1 (10%)**

1-1. 주관연구개발기관

1-1-1. 사업화 목표

(단위 : 백만원, %)

기관명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2023)년 (개발종료 해당년)	(2024)년 (개발종료 후 1년)	(2025)년 (개발종료 후 2년)	(2026)년 (개발종료 후 3년)	(2027)년 (개발종료 후 4년)	(2028)년 (개발종료 후 5년)
(주) 000000	기업 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1,200	2,000	3,000	5,000	8,000	10,000
		개발기 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B)	국내 120 국외 - 소계 120	180 20 200	500 100 600	1,300 200 1,500	2,500 700 3,200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10	10	20	30	40	50

□ 2022년 12월 종료 과제 실시기업 1년차 기술료 예시

- 최종평가 성과 통보일 : 2023-05-30
- 1년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예정시기 : 2025-06-30
- 1년차 기술료 산정 계산식

2024년 기업 총 매출액(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x 사업계획서 상 연구개발결과물 점유비율(매출액기여도) (1년차)
- x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연구개발비) 기여도 : **71.25%**

예)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00,000천원, 민간부담연구개발비 80,000천원, 정산환수금 5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 : 0.7125 -> **71.25%**

$$\frac{200,000,000 - 500,000}{200,000,000 + 80,000,000} = 0.7125$$

□ 2022년 12월 종료 과제 실시기업 1년차 기술료 예시

- 최종평가 성과 통보일 : 2023-05-30
- 1년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예정시기 : 2025-06-30
- 1년차 기술료 산정 계산식

2024년 기업 총 매출액(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4,460,970,473원**

- x 사업계획서 상 연구개발결과물 점유비율(매출액기여도) (1년차) : **0.1 (10%)**
- x 정부지원연구개발비(지자체연구개발비) 기여도 : **71.25%**
- x 기술료율 5% : **0.05**

$$4,460,970,473 \times 0.1 \times 0.7125 = 317,844,146.2(\text{과제관련 매출액})$$

$$317,844,146.2(\text{과제관련 매출액}) \times 0.05 = 15,892,207\text{원}$$

→1년차 기술료 납부금액

IV

관련 F&Q

- **협약 사업계획서상 왜 예상 총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제시해야 하나요?**
 → 예상 총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예상치에 불과하나, 이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은 실제 정률기술료 산정 시 확정된 값으로 활용됩니다.
- **왜 실제 기술료 산정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해야 하나요?**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재고자산수불부 등을 통해 산출한 후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한 것입니다.
- **연구개발기간 또는 사업화 기간 중에 시장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예상 총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및 점유비율 등 사업화 목표를 변경 할 수 있는지요?**
 →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수요기업의 구매의자 철회 등)는 사업화 목표의 변경보다는 기술적 목표 변경 또는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업화 기간 중에 발생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화 목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동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료 납부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예상 총 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등 사업화 목표 제시 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점유비율 수정이 가능하나요?**
 →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서 제시한 R&D 관련 매출목표의 타당성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고 과제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명시된 점유비율 수정은 불가능하며, 해당 점유비율에 맞춰 기술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06

Q&A 및 폐회

- 실집행률 저조기관 대상 1:1 상담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교육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교육에 참석하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교육프로그램 운영방향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수행기관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본 교육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 본 교육이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3. 본 교육의 콘텐츠(주제) 구성은 적절하였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4. 본 교육의 콘텐츠별 진행시간은 적절하였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5. 본 교육의 장소 또는 시설은 만족스러웠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건의사항 및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작성해주세요.

(희망하는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leaving a small margin on the left sid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black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leaving a small margin on the left sid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leaving a small margin on the left side.

MEMO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thin grey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page, leaving a margin on the left side.